

中小企業 商業어음割引의 活性化를
위한 金融政策의 改善方向

韓國租稅研究院

序 言

中小企業을 둘러싼 對內外的인 經營環境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中小企業의 資金調達과 관련된 금융환경의 변화는 中小企業의 資金難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金融自律化의 진전에 따른 政策金融의 縮小, 現행의 通貨管理方式下에서 海外資本流入의 증가, UR 補助金 및 相計關稅協定の 타결 등은 모두 中小企業의 자금조달을 예전보다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것이다. 물론 大企業의 脫銀行化 현상으로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취약한 신용력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어음決濟의 慣行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온 경제에서 商業어음割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實物去來債權을 現金化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國家經濟 전체의 입장에서 보아도 자금흐름을 건전하게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商業어음割引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本 政策報告書는 商業어음割引이 不振한 요인을 규명하고, 商業어음割引의 活性化를 위한 金融政策의 改善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本 政策報告書는 本院의 李基榮 博士가 집필하였다. 著者の 勞苦에 감사드리며, 著者를 대신하여 本稿를 읽고 유익한 助言을 해주신 本院의 成明宰, 李仁杓, 崔長鳳 博士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자료 및 원고정리를 도와준 조기현 연구원, 윤혜순 연구조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著者 個人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本院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1995年 5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朴宗淇

目 次

I. 序 論	9
II. 資金調達手段으로서 企業間信用의 重要性和 外上賣出債權의 現況	11
1. 中小企業 資金調達構造의 特徵: 企業間信用을 中心으로	11
2. 우리나라 企業의 外上賣出債權의 規模 推定과 現金化 現況	16
III. 商業어음割引을 통한 外上賣出債權의 現金化 現況과 問題點	25
1. 商業어음割引의 經濟的 意義	25
2. 商業어음割引制度 및 市場의 現況과 問題點	29
3. 中小企業金融에 있어서 商業어음割引의 重要性 및 問題點	40
IV. 商業어음割引의 不振 要因	44
1. 金融政策的 要因	44
2. 去來慣行上의 要因	52
3. 稅制 및 稅政上의 要因	57
4. 金融機關의 制度運用上의 要因	59
V. 商業어음割引 活性化를 위한 金融政策의 改善方向	62
1. 政策金融의 財政移管 및 再割引制度의 改善	62
2. 通貨管理方式의 改善	68
3. 第3段階 金利自由化의 日程調整	68
4. 信用保證制度의 擴充	73
〈參考文獻〉	75

表 目 次

〈表 II - 1〉 法人製造業體의 資金調達 構成比 推移	12
〈表 II - 2〉 中小製造業體의 利益率 推移	12
〈表 II - 3〉 貸金支給 主要利用 決濟手段 應答比率	13
〈表 II - 4〉 어음, 수표의 利用比重	14
〈表 II - 5〉 中小製造業體의 販賣貸金 決濟 推移	14
〈表 II - 6〉 中小企業의 貸金決濟 狀況	15
〈表 II - 7〉 韓國과 美國 中小企業의 企業間信用:賣出債權/ 買入債務의 比率	16
〈表 II - 8〉 외상賣出債權의 發生 規模와 現金化 現況	19
〈表 II - 9〉 中小製造業體 保有 외상賣出債權의 早期 現金化 希望比率	21
〈表 II - 10〉 中小製造業體가 외상賣出債權을 滿期까지 保有하는 理由	21
〈表 II - 11〉 中小製造業體의 어음割引處別 構成比 推移	22
〈表 II - 12〉 日本의 외상賣出債權의 規模와 現金化 現況	23
〈表 III - 1〉 預金銀行의 運轉資金貸出 中 商業어음割引이 차지하는 比重	27
〈表 III - 2〉 一般銀行의 全體 貸出金 및 割引어음의 平均 利益率	28
〈表 III - 3〉 預金銀行의 運轉資金 貸出金의 現況	29
〈表 III - 4〉 商業어음 再割引 比率의 調整 推移	33
〈表 III - 5〉 商業어음 再割引金利 變動 推移	33
〈表 III - 6〉 金融機關別 商業어음割引의 規模 推移	36
〈表 III - 7〉 金融機關別 외상賣出의 現金化 規模 推移	37
〈表 III - 8〉 金融機關別 商業어음割引 比重 推移	38
〈表 III - 9〉 預金銀行의 商業어음割引 및 再割引 取扱現況	39
〈表 III - 10〉 中小企業 商業어음割引市場의 規模	41

〈表 Ⅲ-11〉 金融機關別 中小企業에 대한 總貸出 및 商業어음割引의 現況	42
〈表 Ⅲ-12〉 制度圈 中小企業貸出市場에서 商業어음割引의 比重 ...	43
〈表 Ⅳ- 1〉 預金銀行의 金融資金貸出 中 政策金融의 推移	45
〈表 Ⅳ- 2〉 韓·日間 商業어음割引 實績 比較	47
〈表 Ⅳ- 3〉 韓·日間 貸出金 對比 商業어음割引 實績 比較	48
〈表 Ⅳ- 4〉 銀行圈과 非銀行金融機關의 受信 推移	50
〈表 Ⅳ- 5〉 從業員 規模別 어음割引의 對象處別 實際 現況	51
〈表 Ⅳ- 6〉 第一銀行 貸出金の 對象別, 擔保別 構成比	53
〈表 Ⅳ- 7〉 預金銀行 中小企業貸出金の 擔保別 構成比	53
〈表 Ⅳ- 8〉 銀行에서의 擔保條件別 어음割引額 構成比	54
〈表 Ⅳ- 9〉 適格어음의 割引 狀況	54
〈表 Ⅳ-10〉 銀行에서 商業어음割引이 원활하지 못한 理由	55
〈表 Ⅳ-11〉 中小企業이 大企業으로부터 받은 不當行爲	56
〈表 Ⅳ-12〉 大企業의 內部留保와 長期어음 決濟의 比重	57
〈表 Ⅳ-13〉 年度別 記帳人員 推移	58
〈表 Ⅳ-14〉 中小製造業體의 받을어음 및 賣出額 規模의 推移	61
〈表 Ⅴ- 1〉 政策金融制度 및 再割引制度의 改編 內容	64
〈表 Ⅴ- 2〉 韓國銀行 再割引規模 推移	65
〈表 Ⅴ- 3〉 表紙어음 導入 以後 金融機關 受信實績 推移	71
〈表 Ⅴ- 4〉 信用保證 實績의 推移	74
〈表 Ⅴ- 5〉 信用保證機關에 대한 出捐 現況	74

圖 目 次

[圖 II-1] 韓國과 日本의 企業間信用 依存度 推移	17
[圖 III-1] 商業어음의 去來構造	32

I. 序 論

최근에 들어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金融環境의 變化와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 및 금융기관의 대응전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수년간 中小企業의 資金調達이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國內外 金利差 등의 요인으로 해외자본의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현행의 通貨管理方式下에서는 불가피하게 가계 및 기업대출 특히 信用力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확대에 커다란 障礙要因이 될 것이다. 해외부문의 通貨增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통화증가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通貨安定證券 등을 통하여 금융부문의 통화를 흡수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交渉力이 약하고 信用力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우선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金融自律化政策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政策金融의 全般的인 縮小 역시 政策金融의 主受惠 對象인 中小企業의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UR 補助金 및 相計關稅協定の 妥結로 中小企業에 대한 補助金制度의 일부가 폐지 혹은 축소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물론 金融市場에서 전개되고 있는 大企業의 脫銀行化 현상으로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력이 점진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혜택은 주로 中堅級 以上の 中小企業에게 돌아가고 있어서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어음決濟의 慣行이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온 경제에서 中小企業에 대한 商業어음割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商業어음割引이 기업 보유의 實物去來債權을 現金化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어음할인은 매

우 우수한 상품이며, 국가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보아도 實物去來를 지원함으로써 자금흐름을 健全하게 誘導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政府 역시 商業어음割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그 규모가 未洽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本 研究는 商業어음割引이 市場機能에 의하여 活性化될 수 있기 위한 金融政策의 改善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第Ⅱ章에서는 企業間信用을 中心으로 中小企業의 資金調達構造의 특징을 개관하고, 우리나라 企業의 外上賣出債權의 規模를 推定하고 이의 現金化現況을 살펴보았다. 第Ⅲ章에서는 商業어음割引의 經濟的인 意義를 개관하고 商業어음割引市場 및 制度의 現況을 파악한 후, 中小企業金融에 있어서 商業어음割引의 重要성과 問題點을 부각하였다. 第Ⅳ章에서는 商業어음割引이 不振한 要因을 金融政策的인 要因, 去來慣行上의 要因, 租稅政策的인 要因 및 金融機關의 制度運用上의 要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마지막 第Ⅴ章에서는 商業어음割引의 活性化를 위한 방안을 金融政策的인 입장에서 제시하였다.

II. 資金調達手段으로서 企業間信用의 重要性和 外上賣出債權의 現況

1. 中小企業 資金調達構造의 特徵 : 企業間信用을 中心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구조를 보면 대기업에 비해 社內留保利益 등 內部資金의 蓄積이 低調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 현재 중소기업의 內部金融 依存度는 37.9%로서 대기업의 56.0%에 비해 크게 낮아 중소기업 財務構造의 脆弱性을 반영하고 있다(〈表 II-1〉 참조). 이와 같은 재무구조의 취약성은 경기요인, 비용요인 및 자금조달구조 요인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1980년대 중반 이후 1988년까지는 경기황황에 힘입어 社內留保利益, 充當金 등이 增大되어 내부금융의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89년 이후에는 賃金上昇 및 換率切上 등으로 價格競爭力이 低下되어 收益性이 惡化됨에 따라 내부금융의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外部金融에 있어서 直接金融보다는 間接金融, 長期借入보다는 短期借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金融費用을 負擔하고 있어 내부이익유보를 통한 內部金融의 擴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임금 등 費用要因의 전반적인 上昇과 財務構造의 脆弱性으로 중소기업의 採算性은 대기업에 비해 더욱 惡化되어 賣出額 經常利益率의 경우 1986년까지만 해도 대기업을 상회하였으나 1987년 이후 反轉되어, 1993년 현재 1.3%로 대기업(1.9%)과의 격차가 深化되고 있다(〈表 II-2〉 참조).

중소기업의 外部資金 調達構造를 보면 대기업에 비하여 直接金融보다는 間接金融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借入金 依存度가 상대적으로 높고 會社債 발행을 통한 資金

〈表 II - 1〉 法人製造業體の 資金調達 構成比 推移

(單位：%)

	大 企 業						中 小 企 業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內 部 金 融	59.6	48.6	32.3	35.1	43.5	56.0	41.9	33.7	27.4	25.8	33.7	37.9
內部留保	22.6	19.3	6.6	10.8	12.2	16.6	15.9	12.3	9.6	4.7	-2.1	8.9
減價償却	30.5	25.1	22.2	20.1	26.9	35.3	21.9	18.5	16.0	18.3	30.8	26.2
充當金	6.5	4.3	3.5	4.2	4.3	4.1	4.1	3.0	1.9	2.8	5.0	2.9
外 部 金 融	40.4	51.4	67.7	64.9	56.5	44.0	58.1	66.3	72.6	74.2	66.3	62.1
間接金融	1.8	18.2	29.7	28.5	34.8	15.7	19.5	34.0	38.2	35.5	46.3	30.3
金融機關 借入金	1.3	13.8	22.3	18.3	21.7	9.3	20.3	28.7	32.1	25.3	36.0	23.8
其他借入金	0.4	4.4	7.4	10.1	13.2	6.3	-0.8	5.4	6.1	10.2	10.2	6.5
直接金融	17.1	15.9	16.9	16.0	10.8	21.4	9.5	5.3	10.6	9.1	8.1	7.8
增資	9.9	7.6	4.6	3.3	4.6	5.9	8.0	5.0	8.8	6.2	6.7	6.4
會社債	7.2	8.5	12.3	12.7	6.2	15.5	1.5	-0.3	1.8	2.8	1.4	1.4
海外借入金	-2.4	-0.1	0.5	0.6	-0.4	-1.9	0.9	0.1	-0.1	1.5	-0.0	-0.5
企業間信用	10.8	5.3	9.4	9.2	4.9	-1.5	12.6	12.1	12.9	14.8	6.6	16.5
其他	13.1	12.1	11.2	10.6	6.2	10.3	15.7	14.7	11.1	13.3	5.4	8.0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韓國銀行，「企業經營分析」，各年度。

〈表 II - 2〉 中小製造業體の 利益率 推移

(單位：%)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賣出額 營業利益率								
中小企業	6.5	6.0	5.7	5.5	5.9	4.8	4.1	5.0
大企業	8.3	7.7	7.2	6.2	6.7	7.3	7.4	8.0
賣出額 經常利益率								
中小企業	3.9	3.3	3.2	2.5	2.6	1.5	0.5	1.3
大企業	3.6	3.7	4.3	2.5	2.2	1.9	1.9	1.9

資料：韓國銀行，「企業經營分析」，各年度。

調達が 저조한 데 따른 것이며,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실적이 미미한 원인은 信用度가 낮아 회사채 발행시 發行要件의 미달, 支給保證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 1993년 현재 直接金融市場에서 중소기업이 발행한 株式·會社債의 比重은 총자금조달액의 7.8%로서 대기업의 21.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차입 등 間接金融의 比重은 30.3%로서 대기업의 15.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企業間信用 依存度는 대기업에 비해 全期間에 걸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3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企業間信用 의존도는 16.5%, 대기업의 企業間信用 의존도는 -1.5%로서, 資金力이 劣勢인 중소기업이 오히려 대기업에게 信用을 供與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企業間信用 의존도가 높은 것은 중소기업과의 거래시 이루어지고 있는 決濟慣行과 관련이 있다. 즉 어음 등 외상 決濟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994년 4월 262개 기업(대기업 48개, 중소기업 214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支給決濟制度 利用實態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및 대기업 모두 각종 代金決濟時 어음을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40%를 上廻하고 있다(〈表 II-3〉 참조). 또한 非現金 決濟手段 中에서 어음의 이용비중(금액기준)이 총 결제규모의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75%를 상회한 것을 보아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어음을 主決濟手段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II-4〉 참조).

〈表 II-3〉 貸金支給 主要利用 決濟手段 應答比率

(單位: %)

	現 金	어 음	當座手票	자기앞수표	其 他	計
大 企 業	18.7	44.5	22.3	11.3	3.2	100.0
中 小 企 業	33.5	43.4	11.3	8.6	3.2	100.0

資料: 韓國銀行.

〈表 II-4〉 어음, 수표의 利用比重

(單位: %)

		10% 未滿	10~30	30~50	50~70	70~90	90% 超過	計	備考 (50%以上)
大 企 業	어 음	2.2	10.9	8.7	23.9	34.8	19.5	100.0	78.2
	당 좌 수 표	43.9	22.0	19.5	2.4	9.8	2.4	100.0	14.6
	자기 앞 수 표	59.4	21.9	9.4	-	3.1	6.2	100.0	9.3
中 小 企 業	어 음	5.6	8.9	8.9	19.6	37.4	19.6	100.0	76.6
	당 좌 수 표	45.9	29.3	11.9	7.3	2.8	2.8	100.0	12.9
	자기 앞 수 표	47.8	30.1	11.5	6.2	3.5	0.9	100.0	10.6
	가 계 수 표 ¹⁾	63.7	22.7	9.1	4.5	-	-	100.0	4.5

註: 1) 자영업자의 경우임.

資料: 韓國銀行.

國民銀行이 매년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販賣代金 決濟方法에 관한 調査에서도 어음 및 외상판매의 비중이 60%를 上廻하는 수준으로 기업간 신용이 자금조달의 중요한 源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II-5〉 참조). 현금결제의 비중이 1988년(42.7%) 이래로 계속 낮은 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은 企業收支 惡化로 자금부족 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企業의 資金難을 반영한 것이다.

〈表 II-5〉 中小製造業體의 販賣貸金 決濟 推移

(單位: %)

	현 금	어 음	외 상 판 매
1988	42.7	43.7	13.6
1989	36.0	47.2	16.8
1990	35.7	47.2	17.1
1991	34.6	45.5	19.9
1992	36.4	50.6	13.0
1993	36.9	50.3	12.8

資料: 國民銀行, 『中小企業 金融利用實態 調査報告書』, 各年度.

企業間信用에는 支給어음, 外上買入金 등과 같이 자금조달의 역할을 하는 買入債務와 받을어음, 外上매출금 등과 같이 信用提供의 역할을 하는 賣出債權이 있다¹⁾.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企業間信用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資金負擔을 완화시켜주기보다는 오히려 加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첫번째는 1988년 이후 販賣代金 回收期間이 매입 채무 회수기간보다 길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外上販賣比率이 外上購入比率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994년 4/4분기중의 중소기업 代金決濟條件을 보면 外上판매비율이 64.0%로 外上구입비율 60.8%보다 높으며, 外上결제기간에 있어서도 90일 이후 결제의 비중이 外上판매시 69.7%로 外上구입시의 59.7%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表 II-6〉 참조).

〈表 II-6〉 中小企業의 貸金決濟 狀況

(單位: %)

	外上去來의 比重					90일 超過 外上결제 比重				
	1988	1990	1992	1993	1994 2/4	1988	1990	1992	1993	1994 2/4
購 入	48.0	45.2	59.2	60.6	60.8	11.8	15.6	48.1	54.5	59.7
販 賣	62.0	55.3	67.4	65.0	64.0	32.1	35.1	60.5	64.2	69.7

註: 1. 각 연도 4/4분기 자료임.

資料: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經營實態 및 動向』, 各號.

두번째는 첫번째 요인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賣出債權殘額이 買入債務額을 上廻하는 信用供與 超過現象이 계속됨에 따라 企業間信用이 중소

1) 받을어음(지급어음)은 物品의 賣出(買入)에 대한 대가로 받은(지급한) 약속어음, 환어음 등 商去來에서 발생한 어음債權(債務)을 말하며, 外上賣出金(外上買入金)은 물품을 신용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販賣(購買)代金の 未受額(未支給額) 및 非어음 형태의 未受債權(未支給債務)을 지칭한다.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의 信用供與 초과현상은 1990년 이후 계속되다가 1993년에 미미한 비율이긴 하지만 반전되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信用供與 초과현상은 買入債務 對比 賣出債權의 比率이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크게 대비된다(〈表 II-7〉 참조).

〈表 II-7〉 韓國과 美國 中小企業의 企業間信用 : 賣出債權 / 買入債務¹⁾의 比率

(單位 : %)

	1989	1990	1991	1992	1993
韓 國	96.5	100.2	103.1	104.0	99.6
美 國	51.4	52.1	52.2	52.6	51.5

註 : 1) 賣出債權은 받을어음과 외상賣出金의 합이고 買入債務는 支給어음과 외상買入金의 합임.

資料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 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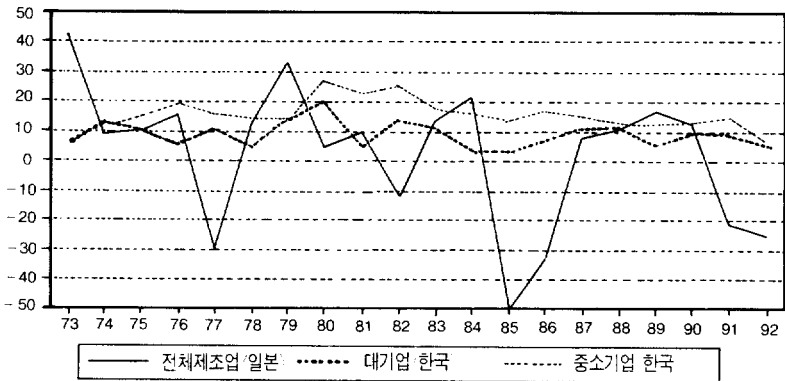
U.S Department of Commerce, *Quarterly Financial Report*, 各 年度.

한편 원자재 및 상품구입에 따른 企業間 去來의 상당부분이 어음으로 결제되고 있는 日本 製造業體의 企業間信用 의존도를 보면 1973년부터 1992년까지 최고 42%에서 최저 -49.2%로 매우 큰 騰落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8~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크게 對比된다([圖 II-1] 참조).

2. 우리나라 企業의 外상賣出債權의 規模 推定과 現金化 現況

外상賣出債權(trade receivables)은 어음형태인 받을어음(note receivables)과 非어음형태인 外상賣出金(account receivables)으로 나누어지는데, 받을어음은 상품 및 제품의 賣出에 대한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과 같이 일반적인 商去來에서 발생한 어음債權을

[圖 II - 1] 韓國과 日本의 企業間信用 依存度 推移



資料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 年度.

日本銀行, 『主要企業經營分析』, 各 年度.

말하며, 외상賣出金은 상품, 제품, 원료 등 營業의 主去來 對象인 물품 또는 이에 準하는 것을 계속하여 信用販賣함으로써 발생하는 販賣代金の 未收金과 임가공 등 用役提供에 의한 營業上의 未收債權을 말한다. 여기서 받을어음은 상거래를 수반하는 眞性어음인 商業어음과 내용상 동일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상 기업이 보유하는 외상賣出債權은 (i) 制度圈 金融機關 및 私金融市場을 통하여 割引이 이루어지거나(어음의 경우), 외상債權貸出 또는 팩토링 등의 형태로 滿期 以前에 早期 現金化되거나 (ii) 他企業에게 決済手段으로써 支給되거나 (iii) 自社가 債權의 형태로 보유하는 등의 형태로 運用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외상매출채권의 보유형태에 관한 결정 역시 適正 資金調達 및 運用에 관한 결정의 範疇 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他企業에게 지급수단으로 사용된 외상매출채권은 특정 시점에서 보면 결국 현금화 혹은 自社保有的 형태를 취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私金融市場을 통한 어음割引에 관한 공식통계를 구할 수 없어서 금융기관을 통한 現金化와 自社保有에 관한 통계만

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외상賣出債權의 運用 現況을 살펴 보았다.

1993年末 現在 외상賣出債權의 發生 規模는 98조 1천억으로 推定되며²⁾, 이 중 商業어음이 43조 5천억원, 비어음형태의 외상賣出金이 54조 5천억원으로 전체 외상매출채권의 44.4%와 55.6%를 점하고 있다 (<表 II-8> 참조). 한편 總賣出額 對比 외상賣出債權 發生 規模의 比率는 1993年末 現在 21.8%로서 전체 조사기간에 걸쳐 계속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近年에 들어 기업의 賣出不振 및 資金難으로 인해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現金決濟의 比重이 減少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1988~1993년 기간중 상업어음과 외상매출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5.0%와 26.4%로서 외상決濟去來가 어음決濟보다 상대적으로 擴大되는 趨勢를 반영하고 있다³⁾.

- 2) 總의상賣出債權 規模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現金化한 商業어음 및 팩토링 割引額(A)과 割引받지 못하고 保有하고 있는 商業어음 및 팩토링 규모(B)의 합(A+B)으로 推計하였다. 구체적으로 A는 [預金銀行:(어음割引額-貿易어음割引額)+외상債權貸出]+(投資金融 및 綜金社:3者어음割引額+팩토링支援額)+(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控除事業基金 중 2號貸出)+(保險社:商業어음割引額)+(相互信用金庫:商業어음割引額)이며 B는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을 이용, 貸借對照表 內 받아들여어음과 외상賣出金을 全產業으로 合하였다.
- 3) 3低 호황기간(1986~1988)에는 기업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사정 호전 등으로 현금 및 어음去來가 增加하여 외상매출금 증가율은 추세치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다음의 表를 참조).

외상賣出債權 發生規模 推移

(單位:10억원, %)

	1983	1984	1985	1986	1987
상업어음	7,944	10,379 (30.7)	9,466 (-8.8)	10,128 (7.0)	12,279 (21.2)
외상매출금	9,558	9,941 (4.0)	13,997 (40.8)	14,815 (5.8)	15,991 (7.9)
외상매출채권	17,502	30,320 (16.1)	23,463 (15.5)	24,943 (6.3)	28,270 (13.3)

註: 1. ()안은 증가율.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및 『經濟統計年報』.

投資金融協會, 相互信用金庫聯合會, 保險監督院,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表 II-8〉 外상賣出債權의 發生 規模와 現金化 現況(全產業)

(單位: 10億원,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연평균증가율
商業어음(A)	14,549	19,071 (31.1)	26,696 (40.0)	34,293 (28.5)	37,835 (10.3)	43,538 (15.1)	(25.0)
企業의 保有部分	7,869	10,533 (33.9)	15,853 (50.5)	19,438 (22.6)	20,806 (7.0)	23,600 (13.4)	(25.5)
金融機關割引分(B)	6,680	8,538 (27.8)	10,843 (27.0)	14,855 (37.0)	17,029 (14.6)	19,938 (17.1)	(24.7)
現金化比率(B/A)	45.9	44.8	40.6	43.3	45.0	45.8	-
外상賣出金(C)	17,064	20,642 (21.0)	28,786 (39.5)	35,930 (24.8)	41,674 (16.0)	54,554 (30.9)	(26.4)
企業의 保有部分	16,062	19,741 (22.9)	27,550 (39.6)	35,019 (27.1)	39,294 (12.2)	49,867 (26.9)	(25.7)
外상債權貸出 및 팩토링(D)	1,002	901 (-10.1)	1,236 (37.2)	911 (-26.3)	2,380 (161.3)	4,687 (96.9)	(51.8)
現金化比率(D/C)	5.9	4.4	4.3	2.5	5.7	8.6	-
外상賣出債權(E=A+C)	31,613	39,713 (25.6)	55,482 (39.7)	70,223 (26.6)	79,509 (13.2)	98,092 (29.9)	(27.0)
金融機關支援規模(F)	7,682	9,439 (22.9)	12,079 (28.0)	15,766 (30.5)	19,409 (23.1)	24,625 (26.9)	(26.3)
現金化比率(F/E)	24.3	23.8	21.8	22.5	24.4	25.1	-
全產業 賣出額(G)	191,067	206,205 (7.9)	280,895 (36.2)	345,862 (23.1)	385,985 (11.6)	450,850 (16.8)	(19.1)
賣出額對比 外상賣出債權의 比率(E/G)	16.5	19.3	19.8	20.3	20.6	21.8	-

註: 1. 기업의 보유부분은 각 연도 12월 決算期 현재 수치임.

2.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및 『企業經營分析』, 各 年度.

投資金融協會, 相互信用金庫聯合會, 保險監督院,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우리나라의 경우 비어음형태인 외상매출금에 대한 금융공급수단은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외상채권대출과 팩토링에 한정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외상매출채권의 현금화는 어음할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3년

未 現在 制度金融圈을 통해 現金화된 外上賣出債權은 24조 6천억원으로서 總發生 外上賣出債權 98조 1천억원의 25.1%에 불과하다. 이 중 어음 할인 형태로 현금화된 규모는 19조 9천억원으로, 이는 전체 받아들여음의 45.8%에 해당되며 外上채권대출의 형태로 현금화된 규모는 5천억원으로, 이는 전체 外上대출금의 8.6%에 불과하다. 外上대출채권의 早期 現金化 결정은 金融市場의 供給制約下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및 운용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早期 現金化率이 適正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企業의 需要側面과 金融機關의 供給側面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企業의 外上賣出債權의 早期 現金化 비율은 적정 수준보다 크게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판단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東洋經濟研究所의 實態調査分析(1993)

東洋經濟研究所가 1992년 111개의 비상장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受取하고 있는 外上賣出債權에 대한 早期 現金化 比率은 연간 수취한 外上대출채권의 38.0%인 데 반해, 早期 現金化를 희망하는 수준은 外上대출채권의 50% 이상을 원하는 기업체 수가 72.0%에 달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현재보다 早期 現金化가 더 많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表 II-9〉 참조). 특히 全額 早期 現金化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도 35.1%를 차지하고 있어서 早期 現金化 비율이 適正水準 以下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外上대출채권을 滿期까지 保有하는 理由에 대해서는 資金포지션을 調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割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5.2%를 차지하고 있다(〈表 II-10〉 참조). 그러나 자금포지션 조정상 滿期까지 保有하려 한다는 응답에는 중소기업의 資金難과 결부하여 볼 때 擔保不足 등의 이유로 할인을 아예 포기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할인을 받

지 못하기 때문에 외상매출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비율은 應答 結果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表 II - 9〉 中小製造業體 保有 外상賣出債權의 早期 現金化 希望 比率

(單位: 個, %)

	業 體 數	比 率
全額 早期 現金化	39	35.1
約 75% 程度	19	17.1
約 50% 程度	22	19.8
50% 未滿	10	9.0
필요 없음	11	9.9
其他	10	9.0
合 計	111	100.0

資料: 東洋經濟研究所, 『表紙펄팅業務 活性化 方案』, 1993. 1.

〈表 II - 10〉 中小製造業體가 外상賣出債權을 滿期까지 保有하는 理由

(單位: 個, %)

	業 體 數	比 率
할인을 받지 못함	28	25.2
자금포지션 조정	42	37.8
지급수단으로 이용	15	13.5
기 타	26	23.4
合 計	111	100.0

資料: 東洋經濟研究所, 『表紙펄팅業務 活性化 方案』, 1993. 1.

나. 金融機關 以外에서의 어음割引 推移

1989년에서 1993년까지 중소기업체의 어음割引處別 構成比를 보면 私債業者 등 金融機關 以外의 대상으로부터의 割引比重이 계속 5%를 상

廻하고 있다(〈表 II-11〉 참조). 金利面에서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월등히 不利한 私金融市場에서 이와 같은 규모의 어음割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制度金融圈으로부터의 어음할인이 중소기업체의 수요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表 II-11〉 中小製造業體의 어음割引處別 構成比 推移

(單位: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銀行	87.3	85.8	84.7	84.9	84.9	86.1
銀行 以外 金融機關	8.0	9.0	9.8	9.4	9.2	8.9
金融機關 以外	4.7	5.2	5.5	5.7	5.9	5.0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國民銀行, 『中小企業 金融利用實態 調査報告書』, 各 年度.

다. 韓·日間 외상賣出債權의 現金化 比率의 比較

日本의 경우 다른 국가와는 달리 원자재 및 상품구입에 따른 기업간 거래의 상당부분이 어음으로 결제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企業間信用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圖 II-1]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일본 기업들의 외상 매출채권은 각종 通貨 및 非通貨金融機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어음割引과 팩토링 회사가 취급하는 팩토링 前渡金融의 2가지 방법에 의해 早期現金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日本의 팩토링 금융은 팩토링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眞性어음 또는 외상賣出金을 讓渡받는 대신에 資金을 融通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팩토링의 대부분은 매출채권의 양수에 의한 것 보다는 어음의 割引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貸出의 提供에 그치고 있다.

1991年末 현재 日本 金融機關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早期 現金化 支援規模는 총 36조 7천억엔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일본의 전체기업

〈表 II - 12〉 日本의 外상賣出債權의 規模와 現金化 現況(全産業)

(單位: 10億엔, %)

	1988	1989	1990	1991
商業어음(A)	47,277	52,629	51,728	49,032
企業의 保有部分	13,849	16,234	16,859	14,509
金融機關 割引分(B)	33,428	36,395	34,869	34,523
現金化比率(B/A)	70.7	69.2	67.4	70.4
외상賣出金(C)	35,961	44,325	47,805	47,675
企業의 保有部分	34,623	42,693	45,863	45,515
팩토링 支援(D)	1,338	1,632	1,942	2,160
現金化比率(D/C)	3.7	3.7	4.1	4.5
외상賣出債權(E=A+C)	83,238	96,954	99,533	96,707
金融機關 支援規模(F)	34,766	38,027	35,811	36,683
現金化比率(F/E)	41.8	39.2	36.0	37.9
全産業 賣出額(G)	289,091	346,532	363,307	362,494
賣出額 對比 外상賣出債權의 比率(E/G)	28.8	28.0	27.4	26.7

資料: 日本銀行, 『經濟統計年報』, 1993.

————, 『主要企業經營分析』, 各 年度.

東洋經濟研究所, 『中小企業 流通金融 專門機關 및 物流센터 設立에 관한 妥當性 檢討』, 1992. 5.

이 보유하고 있는 外상賣出債權額의 37.9%에 이르는 比重이다(〈表 II - 12〉 참조).

이러한 지원비율은 同 期間의 우리나라(22.5%)와 比較하여 볼 때 약 15% 포인트 높은 比率이며 조사기간 전체를 놓고 볼 때 15%~20% 포인트 가량 높다. 일본 역시 팩토링 업무의 수준이 아직은 미약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팩토링금융이 全體 現金化 支援額 가운데 차지하는 比重은 5.9%(1991년 현재)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94.1%)의 現金化가 어음割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받을어음 전체의 70.4%(1991년의 경우)가 어음할인의 형태로

早期 現金化가 이루어지고 있고 외상賣出金의 4.5%가 팩토링金融의 형태로 早期 現金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받을어음의 약 70%에 대해서 기업규모, 담보유무와 상관없이 信用으로 어음割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어음할인 비율이 높은 것은 어음이 實物에 의해 擔保가 되고 自動決濟性이 있으며 收益性이 높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어음결제 비중이 높은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의 현금화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Ⅲ. 商業어음割引을 통한 외상賣出債權의 現金化 現況과 問題點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외상賣出債權의 早期 現金化 比率는 기업간 거래시 어음결제 비중이 높은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비슷한 日本에 비해 월등히 낮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현금화 희망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이로 인해 私金融市場을 통한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韓國, 日本 모두 주로 어음할인의 형태를 통하여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本章에서는 商業어음割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주로 商業어음割引을 통해서 외상매출채권의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糾明해 보고, 우리나라 商業어음割引의 現況을 金融機關別로 파악하여 日本과 對比한 후, 특히 中小企業金融에 있어서 商業어음割引의 重要性을 檢討하고자 한다.

1. 商業어음割引의 經濟的 意義

商業어음(commercial bills)은 상품의 賣買代金 支給 등 실제의 商去來에 의하여 成立된 어음을 말하며 상품의 買受人이 賣渡人 앞으로 발행한 約束어음(promissory note), 買受人이 인수한 換어음(bill of exchange) 및 貨物을 담보로 하는 荷換어음⁴⁾(sight draft with bill of lading attached)을 포함한다. 상업어음은 단순한 資金融通을 위하

4) 荷換어음은 換어음의 일종으로 貨物, 즉 貨物 價還證 또는 般荷證券을 담보로 하며, 오늘날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여 발행되는 소위 融通어음과 달리 實物去來에 隋伴하여 발생하므로 어음代金은 商品賣却代金으로 償還될 수 있어 지급의 확실성이 높은 어음이지만 荷換어음처럼 貨物證券이 부대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어음割引 依賴人이나 支給人의 信用에 의해 거래가 성립되는 특색이 있다. 商業어음割引은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背書讓渡 및 引受 포함)된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이 割引買入함으로써 企業間의 信用을 銀行貸出로 支援하는 대출양식이다. 상업어음과 商業어음割引이 지니는 경제적 의의와 기능을 經濟主體別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 企 業

商業어음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및 기업이 생산한 중간재, 商品에 대한 企業間 去來를 圓滑하게 함으로써 企業間 信用去來를 促進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은 과거부터 어음을 통한 외상去來의 決済慣行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온 우리나라나 일본 등의 기업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⁵⁾. 또한 건전한 신용거래문화 형성을 통한 信用社會의 定着은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商業어음割引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을 조기에 지급하여 주는 외상매출채권의 현금화 수단으로서 企業의 短期運轉資金의 主要 調達源이 되고 있다. 실제로 예금은행을 통해 우리나라 全產業에 공급된 運轉資金 가운데 상업어음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5.4%를(1993년 말 현재) 나타냈다(〈表 Ⅲ-1〉을 참조).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商業어음割引이 매우 유용한 短期資金 調達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체의 경우 商業어음

5)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어음을 통한 외상去來의 결제관행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는 별도의 문제이다.

〈表 Ⅲ-1〉 預金銀行의 運轉資金貸出 中 商業어음割引이 차지하는 比重

(單位: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1.3	11.2	12.6	14.4	14.4	15.4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號.

割引制度를 적절히 활용하면 원재료의 구입부터 제품의 판매까지 자기 자금의 부담없이 신용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 하반기들어 전반적인 임금상승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저부가가치 공정을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 영세기업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 있어서 企業間信用을 뒷받침하는 상업어음할인의 중요성은 매우 큰 것이다.

나. 金融機關

할인어음은 만기일에 어음 發行人과 割引 依賴人의 거래은행간 어음 交換過程을 통하여 自動支給되는 自動決濟性(self-liquidation)을 지니고 있어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비교적 資金回收가 확실하고, 대출기간 또한 短期여서 資金回轉率이 높아 流動性의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상품이다⁶⁾. 또한 商業어음割引은 금융기관이 支給期日까지의 이자(割引料)를 미리 控除하고 買入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은행으로부터 低利로 再割引補助가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기관의 收益性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表 Ⅲ-2〉에서 보듯이 실제로 우리나라 일반은행이 취급한 할인어음의 平均利益率은 전체 대출금의 平均利益率보다 낮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⁷⁾.

6) 金俊經(1991)을 참조.

7) 추정방법, 결과 및 해석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李基榮(1994. 3)을 참조하라.

〈表 Ⅲ-2〉 一般銀行의 全體 貸出金 및 割引어음의 平均 利益率

(單位: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費用 ¹⁾ 包含時	全體 貸出金	0.27	1.04	1.88	1.33	1.87	1.26
	割引어음	2.21	1.73	3.30	1.98	1.91	2.12
費用 除外時	全體 貸出金	2.71	3.53	4.83	4.31	4.79	4.33
	割引어음	3.85	3.66	4.59	3.57	3.47	4.19

註: 1) 비용은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은행의 제반 경비를 의미함.

資料: 一般銀行의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 各 年度. 李基榮(1994. 3)에서 引用.

다. 國民經濟

商業어음은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眞性어음(real bills)이어서 자금용도가 분명하여 資金轉用의 소지를 줄임으로써 자금흐름을 健全하게 誘導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商業어음割引은 生産的 흐름을 유도하고 實物經濟를 직접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長期 施設資金의 경우 事前에 사업계획서 등이 금융기관에 제출되므로 대출금의 사용에 대한 事後의인 통제가 가능한 데 반해 短期 運轉資金의 경우 商業어음割引, 무역어음할인, 외상채권대출 등 일부를 제외하면 資金用途가 不明한 경우가 많다⁸⁾.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비해 대출금 중 운전자금의 비중이 높아 資金轉用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1993년 말 현재 예금은행의 총대출금 중 運轉資金이 차지하는 比重은 83.6%이며, 이 중 70.4%가 자금용도가 불명확한 자금으로 이루어져 있다(〈表 Ⅲ-3〉 참조).

8) 현재 금융기관의 운전자금에 대한 事後管理는 擔保管理 爲主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금의 용도가 적절한지는 전적으로 기업의 결산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운전자금의 자금전용에 대한 事後管理體制는 사실상 全無한 형편이다.

〈表 Ⅲ-3〉 預金銀行의 運轉資金 貸出金の 現況

(單位: 10億원,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總 貸 出 金 (A)	48,505	62,548	74,029	89,416	102,797	115,137
運 轉 資 金 (B)	39,568	52,076	61,205	74,462	86,356	96,232
用 度 明 確	4,676 (11.8)	6,186 (11.9)	8,180 (13.4)	11,181 (15.0)	13,038 (15.1)	15,170 (15.8)
用 度 不 明	34,892 (88.2)	45,890 (88.1)	53,025 (86.6)	63,281 (85.0)	73,318 (84.9)	81,062 (84.2)
B/A	81.6	83.3	82.7	83.3	84.0	83.6

註: 1. 用途가 明確한 運轉資金은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할인, 외상채권대출을 포함하며 用途가 불명확한 자금은 이외의 운전자금임.

2. ()안은 운전자금에 대한 비중.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 年度.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商業어음 및 이의 割引은 기업, 금융기관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매우 重要한 經濟的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企業間 어음決濟 慣行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고 運轉資金의 貸出比重이 큰 경제에 있어서 원활한 商業어음 割引은 企業간신용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資金轉用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資金흐름을 生産的인 方向으로 誘導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尤효한 運전자금 공급수단으로서 金融自律化의 進展 및 UR 補助金協定 妥結로 인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政策金融 供給機能을 補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것이다.

2. 商業어음割引制度 및 市場의 現況과 問題點

현재 商業어음割引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은 預金銀行과 長期信用銀行, 投資金融會社 및 綜合金融會社, 生命保險會社, 相互信用金庫, 信用

카드會社 그리고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등인데 이들 기관의 商業어음 割引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고, 금융기관별 商業어음 割引의 규모 및 운용 현황을 보자.

가. 銀行⁹⁾(預金銀行과 長期信用銀行)

銀行은 현재 우리나라 商業어음 割引의 最大 供給者이며 은행의 할인 대상어음은 상거래에 수반하여 發行·讓渡背書 또는 引受된 眞性어음인데, 은행들의 실제 할인 취급은 한국은행의 재할인이 이루어지는 재할인 대상어음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割引率은 再割引適格어음인 경우 8.5%(1994년 11월 현재)¹⁰⁾이고 其他 어음은 自由化되어 있다. 割引期間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금융관행상 단기 운전자금 대출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最長 1年 以內이나, 일반적으로 韓國銀行의 再割引期間이 90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서 殘餘滿期 90일 이내의 어음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割引比率은 100%이며 分割割引은 不可能하다. 할인된 어음은 支給期日이 到來하면 할인 取扱銀行이 어음交換에 回附하거나 直接 支給人의 去來銀行에 추심하여 상환을 받고 있으며, 할인받은 어음이 不渡가 났을 경우에는 割引 依頼人 앞으로 환매청구를 하게 된다. 현재 (i) 信用이 良好한 경우 (ii) 韓國銀行 再割引適格業體가 發行(양도배서 또는 인수 포함)한 어음 (iii) 信用保證基金이나 技術信用保證基金이 保證한 어음은 信用만으로 割引去來가 可能하나 그 외의 기업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¹¹⁾. 銀行은 當該 業體의 總賣出額 規模, 받은

9) 産業銀行과 輸出入銀行은 상업어음할인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10) 第3段階 金利自由化 措置로 1994년 12월 1일부터 再割引適格어음에 대해서도 불완전하나 自由化된 金利에 의해 貸出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는 第V章의 내용을 참조.

11)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경우 이들 어음에 대해서도 不動產 등의 擔保가 제공되어야 할 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第IV章의 내용을 참조.

어음 平均殘額, 賣出額 中外貨稼得 實績 등을 審査하여 適正割引規模를 設定하고 있다. 割引 신청시에는 의뢰인이 양도배서한 상업어음, 차용신청서, 어음거래 관련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어음거래의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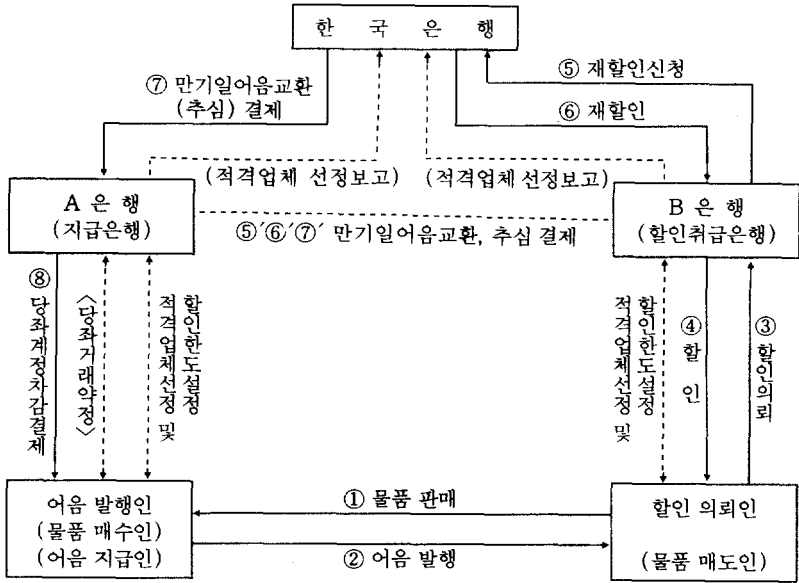
상업어음을 할인한 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再割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의 再割引對象 어음은 (i) 한국은행 總額限度 대출관련 할인 적격업체¹²⁾가 발행(양도배서 및 인수 포함) 또는 受取하였거나 信用保證基金이나 技術信用保證基金이 보증한 어음 (ii) 物品賣買, 貨加工, 鑛工業生産設備 建設, 道路 및 海上貨物 運送, 港灣 荷役, 船舶 修理, 産業廢棄物 處理, 産業디자인·包裝 代金 및 産業用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 베이스의 開發·供給代金を 결제하기 위한 어음 (iii) 90일 以內에 滿期가 到來하는 어음¹³⁾ (iv) 中小企業(「金融機關 與信運用規程」제5조에서 정하는 系列企業群 所屬 企業體 除外) 또는 中小企業에 準하는 企業이 割引依賴한 어음 등의 요건을 구비한 어음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商業어음割引과 관련되는 경제주체 사이의 업무 흐름을 정리하면 [圖 Ⅲ-1]과 같다.

12) 再割引適格業體는 企業の 신청에 의하여 金融機關이 選定하도록 되어 있다. 적격업체의 선정요건은 (i)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企業體 綜合評價表의 綜合評點이 50점 以上(中小企業의 경우는 45점 이상)일 것. (ii) 自行 또는 他行과 當座去來가 있는 企業로서 그 去來實績이 良好할 것. 단, 중소기업으로서 受取어음의 割引受惠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좌거래가 없더라도 적격업체로 선정 가능. (iii) 延滯貸出金 또는 支給保證 代支給金を 완전히 정리한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企業일 것. 다만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 대지급금의 보유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는 예외. (iv) 適格業體 자격이 取消된 후 1년 以上 經過한 企業일 것. (v) 적격업체 자격의 갱신 또는 재심사판정을 받아야 할 기간을 경과하여 적격업체 자격을 계속한 사실이 발견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企業일 것. (vi) 政府投資機關 및 政府出資業體, 金融機關管理 企業體, 産業政策審議會에서 지정한 産業合理化企業, 상공부가 제정한 「유망 중소기업 발굴·지원 요령」에 의거 선정된 有望中小企業,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은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격업체로 선정이 가능하다.

13) 再割引 期間을 120일로 연장하여 한시적(1992. 5~1993. 9)으로 운용된 적도 있다.

[圖 III-1] 商業어음의 去來構造



再割引의 總額限度制 實施(1994. 3. 15)에 따라 은행에 대한 상업어음의 재할인은 銀行別 總額限度 內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액한도는 각 은행의 商業어음割引과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생산자금대출 등을 고려하여 每 3個月마다 調整하도록 되어 있다. 대기업 발행 상업어음은 재할인 대상에서 제외(1989. 2. 8부터)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발행 상업어음은 총액한도제의 실시로 은행할인 취급액의 50%를 自動적으로 재할인하여 주는 自動再割引制度는 廢止되었으나, 아직 총액한도제의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대체로 50%의 재할인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재할인금리는 1980년 6월 年 19.5~20% 수준까지 이르렀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2년 이후 5.0~8.0% 수준으로 하향되어 1993년 11월 현재 5.0%를 유지하고 있다.

〈表 Ⅲ-4〉 商業어음 再割引 比率의 調整 推移

(單位: %)

區 分	1983. 4	1986. 7	1988. 9	1989. 2	1989. 5	1989. 12	1993. 1	1994. 3
中小企業								
非上場中小製造業體	70	60	50	50	60	70	50	폐지
其他 中小企業	70	60	50	50	60	60	50	폐지
大企業	30	30	30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資料: 韓國銀行, 『通貨信用政策 運用關聯 規程集』.

〈表 Ⅲ-5〉 商業어음 再割引金利 變動 推移

(單位: 年利 %)

實 施 日	1982. 5. 7	1986. 7. 10	1988. 9. 2	1989. 11. 14	1993. 1. 26
金 利	5.0	7.0	8.0	7.0	5.0

資料: 韓國銀行, 『調査統計月報』, 1994. 10.

나. 投資金融會社 및 綜合金融會社

投金 및 綜金社의 商業어음割引은 팩토링計定 및 第3者 어음割引計定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기업어음시장에서는 仲介機關의 할인을 거쳐 투자가에게 매출되는 企業어음이 대중을 이루고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적격업체에 대한 직접할인이며 眞性어음인 第3者 어음割引 規模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1992년 7월(綜金社는 1993년 1월)부터 허용된 표지팩토링어음 발행으로 팩토링업무가 活性化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취한 眞性어음은 제3자 방식보다는 팩토링 방식으로 할인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割引對象 企業은 投金 및 綜金社가 選定한 適格業體이며 금리는 자유화되어 있다.

다. 生命保險會社

生命保險會社의 商業어음割引은 資產運用 중 貸出金 項目으로 運用하고 있으며 주로 대형 生保社에서 그룹관련 商業어음割引을 해주고 있다. 여타 기관에 비하여 總與信 對比 商業어음割引 比率이 대단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保險 加入者에 한하여 어음을 할인해 주며 담보조건 및 할인대상어음 요건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엄격하기 때문이다.

라. 相互信用金庫

상호신용금고는 商業어음割引시장에서 은행 다음으로 제2의 商業어음割引 供給者이며, 割引對象어음은 商去來에 隋伴하여 발행된 어음으로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가 면제된 어음이다. 할인 대상자는 상호신용금고의 계원 또는 부금가입자이며 割引期間은 6개월 이내이다.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어음은 小規模 企業이 발행한 어음이 대부분이어서 一般賣出 등을 통한 할인자금의 조달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1991년 12월부터 信用管理基金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가 할인한 상업어음을 재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財源은 신용금고의 예탁금(예탁금리 : 1994년 11월 현재 9.5%)에 의존하고 있으며, 再割引金利는 11.0%(1994년 11월 현재)이며 재할인 규모는 1993년 말 현재 730억원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마.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어음이 거래 상대방의 지급기일 연기로 現金化가 지연될 때 年利 8.5%(1994년 11월 현재)의 공제기금 2호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財源

은 政府出捐金 및 중소기업자(부금가입자)의 賦金과 基金運用 收益金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바. 信用카드會社

할인대상어음은 上場會社 발행어음으로 할인기간은 90~180일이며 割引金利는 自由化되어 있다. 信用카드會社를 통한 商業어음割引의 공식통계는 없으나 대략 1조원 규모의 商業어음割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表 Ⅲ-6〉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별 商業어음割引 규모의 推移를 보여주고 있다. 1993년 말 현재 금융기관별 商業어음割引 취급실적을 보면 預金銀行이 14조 8천억원, 相互信用金庫가 4조 4천억원,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가 3천억원, 投金社가 2천억원, 生命保險會社가 2천억원 등의 순으로, 약 20조원의 商業어음割引이 이루어졌다. 이는 동일 시점에 발생한 상업어음 43조 5천억원의 45.8%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1983~1993년 사이 상업어음發生 平均 增加率(19.4%)과 거의 비슷한 증가율(19.8%)로 商業어음割引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 기간 동안 할인을 통한 現金化의 平均 比率는 42.8%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별로 볼 때 商業어음割引의 최대 공급자는 예금은행으로서 제2의 공급자인 상호신용금고와 함께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비율로 商業어음割引을 증가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어음할인이 아닌 방법으로 외상賣出債權을 현금화하는 수단인 預金銀行의 외상債權貸出과 投金社 및 綜金社의 팩토링금융의 현황은 〈表 Ⅲ-7〉에 나타나 있다. 이들 수단을 통해 現金化된 規模는 1993년 말 현재 4조 7천억원으로 전체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8.6%를 접하며, 어음할인을 통한 현금화 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投金社 및 綜金社에게 表紙팩토링어음을 허용한 이후 팩토링금융이 매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表 Ⅲ-6〉 金融機關別 商業어음割引의 規模 推移

(單位: 10億원, %, 末殘基準)

	商業어음 發生規模(A)	金融機關別 商業어음(B)						支援比率 (B/A)	
		預金銀行 ¹⁾	投資金融 ²⁾	綜合金融 ³⁾	生命保險 ³⁾	相互信用 ³⁾	中企協 ⁴⁾		
1983	7,944	3,413	2,065	481	19	249	598	-	43.0
1984	10,379	3,449	2,292	268	29	177	682	-	33.2
	(30.7)	(1.1)	(11.0)	(-44.3)	(53.7)	(-29.0)	(14.0)		
1985	9,466	4,184	2,672	218	10	346	938	-	44.2
	(-8.8)	(21.3)	(16.6)	(-18.7)	(-67.5)	(95.7)	(37.5)		
1986	10,128	4,320	2,916	166	15	59	1,157	7	42.7
	(7.0)	(3.3)	(9.1)	(-23.7)	(52.1)	(-82.9)	(23.4)	(-)	
1987	12,279	5,128	3,411	164	12	16	1,488	38	41.8
	(21.2)	(18.7)	(17.0)	(-1.6)	(-21.2)	(-73.3)	(28.6)	(463.2)	
1988	14,549	6,680	4,475	385	23	12	1,710	74	45.9
	(18.5)	(30.3)	(31.2)	(135.4)	(100.9)	(-21.5)	(14.9)	(93.2)	
1989	19,071	8,538	5,940	373	5	13	2,094	113	44.8
	(31.1)	(27.8)	(32.7)	(-3.1)	(-77.9)	(2.4)	(22.5)	(53.1)	
1990	26,695	10,843	7,725	191	15	15	2,732	165	40.6
	(40.0)	(27.0)	(30.1)	(-48.7)	(186.3)	(15.8)	(30.5)	(45.8)	
1991	34,293	14,855	10,759	155	17	20	3,630	274	43.3
	(28.5)	(37.0)	(39.3)	(-19.0)	(17.1)	(34.7)	(32.9)	(66.2)	
1992	37,835	17,029	12,426	90	17	82	4,123	290	45.0
	(10.3)	(14.6)	(15.5)	(-41.6)	(-1.7)	(312.6)	(13.6)	(5.8)	
1993	43,538	19,938	14,774	241	18	166	4,426	313	45.8
	(15.1)	(17.1)	(18.9)	(166.1)	(4.2)	(103.1)	(7.4)	(8.0)	
평균	(19.4)	(19.8)	(22.1)	(10.1)	(24.6)	(35.8)	(22.5)	(31.6)	42.8

註: 1. () 안은 증가율.

1) 예금은행: 어음할인계정에서 무역어음할인액 차감잔액.

2) 투자금융 및 종합금융: 제3차어음할인액.

3) 생명보험 및 상호신용금고: 대출금중 상업어음할인 과목.

4) 중기협(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 제2호대출액
(1986년부터 지원).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및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投資金融協會, 綜合金融協會, 保險監督院, 相互信用金庫聯合會, 中小企業協同組
合中央會.

〈表 Ⅲ-7〉 金融機關別 외상賣出의 現金化 規模 推移

(單位: 10億원, %, 末殘基準)

	외상賣出金 規模(A)	金融機關別 외상賣出의 現金化 規模(B)			支援比率 (B/A)	
		預金銀行 ¹⁾	投資金融 ²⁾	綜合金融 ²⁾		
1983	9,558	58	55	-	3	0.6
1984	9,941	124	123	-	1	1.2
1985	13,997	185	177	-	8	1.3
1986	14,815	210	195	-	15	1.4
1987	15,991	931	167	738	26	7.2
1988	17,064	1,002	200	784	18	5.9
1989	20,643	901	246	634	21	4.4
1990	28,785	1,236	341	857	38	4.3
1991	35,930	911	273	581	57	2.5
1992	41,674	2,380	232	2,115	33	5.7
1993	54,554	4,687	176	4,418	93	8.6

註: 1) 예금은행은 예금은행 대출금과목 중 외상채권대출액.

2) 투자금융 및 종합금융은 팩토링지원액이며 투자금융의 경우 자료가 없어 1987년 이후부터 정리하였음.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및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投資金融協會, 綜合金融協會.

〈表 Ⅲ-8〉은 商業어음割引市場의 金融機關別 比重을 보여주고 있다. 1993년 말 현재 預金銀行이 전체 商業어음割引의 74.1%를 담당함으로써 最大의 商業어음割引 供給者 역할을 하고 있으며 相互信用金庫(22.2%)가 第2의 商業어음割引 供給者이다. 이 외에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1.6%), 投金社(1.2%), 生命保險會社(0.8%), 綜金社(0.1%)의 순서이다. 商業어음割引 시장에서 차지하는 예금은행의 비중은 1983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대하여 오고 있는데, 이는 예금은행이 한국은행의 再割引 對象機關으로서 1980년대에 지속적으로 추진된 中小企業 金融政策의 強化로 한국은행이 재할인 확대를 통해 예금은행의 商業어음割引을 지원하여 온 결과이다.

〈表 Ⅲ-8〉 金融機關別 商業어음割引 比重 推移

(單位: %)

	預金銀行	投資金融	綜合金融	生命保險	相互信用	中企協	合 計
1983	60.51	14.10	0.56	7.30	17.53	-	100.00
1984	66.47	7.76	0.86	5.13	19.78	-	100.00
1985	63.87	5.21	0.23	8.28	22.42	-	100.00
1986	67.51	3.85	0.34	1.37	26.79	0.16	100.00
1987	66.52	3.19	0.22	0.31	29.02	0.75	100.00
1988	67.00	5.76	0.35	0.19	25.60	1.11	100.00
1989	69.57	4.37	0.06	0.15	24.53	1.33	100.00
1990	71.24	1.76	0.13	0.14	25.20	1.52	100.00
1991	72.42	1.04	0.12	0.13	24.44	1.85	100.00
1992	72.97	0.53	0.10	0.48	24.21	1.71	100.00
1993	74.10	1.21	0.09	0.83	22.20	1.57	100.00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및 『企業經營分析』, 各 年度.

投資金融協會, 綜合金融協會, 保險監督院, 相互信用金庫聯合會,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商業어음割引 시장에서 최대의 공급자인 預金銀行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이 취급한 할인어음 중 適格어음에 대해 대략 50% 정도를 低利로 再割引支援을 받고 있다. 총액대출제 실시(1994. 3. 15) 이후에도 대체로 이와 같은 비율로 재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재할인대상인 中小企業에 대한 어음割引이 재할인제도의 변경으로 急激하게 減少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다. 총액한도제로 이행하기 직전인 1994년 2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商業어음割引 대비 韓國銀行의 商業어음再割引의 比率는 42.2%에 이르고 있다(〈表 Ⅲ-9〉 참조). 이와 같은 한국은행의 상업어음재할인 규모는 한국은행 총대출금의 31.4%를 차지하는 비율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商業어음割引이 한국은행의 通貨管理에 큰 負擔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預金銀行의 商業어음割引 增加率이 대체로 예금은행 總貸出金 增加率을 넘는 수준에서 실현되어 왔는데, 이 또한 韓

國銀行 再割引 擴大를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金融支援 強化의 結果로 해석될 수 있다. 재할인 적격업체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4년 2월 말 현재 총 3만 4,134개 업체로 1個社當 평균 4억 3천만원의 商業어음 割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1억 5천만원의 재할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表 Ⅲ-9〉 預金銀行의 商業어음割引 및 再割引 取扱現況

(單位: 10億圓, %, 末殘基準)

	預金銀行 貸出金(A)	商業어음 割引(B)	韓銀 再割引(C)	韓銀 總貸出(D)	適格業體 數(E)	B/A	C/B	C/D	B/E
1983	24,150	2,065	955	5,765	N.A	8.6	46.2	16.6	N.A
1984	27,979	2,293	1,063	7,622	N.A	8.2	46.3	13.9	N.A
	(15.9)	(11.0)	(11.3)	(32.2)					
1985	33,811	2,672	1,321	9,641	N.A	7.9	49.4	13.7	N.A
	(20.8)	(16.5)	(24.3)	(26.5)					
1986	39,099	2,916	1,292	10,157	N.A	7.5	44.3	12.7	N.A
	(15.6)	(9.1)	(-2.2)	(5.4)					
1987	43,096	3,411	1,620	10,783	N.A	7.9	47.5	15.0	N.A
	(10.2)	(17.0)	(25.4)	(6.2)					
1988	48,805	4,476	1,862	9,725	N.A	9.2	41.6	19.1	N.A
	(13.2)	(31.2)	(14.9)	(-9.8)					
1989	62,548	5,940	2,588	10,290	17,716	9.5	43.6	25.2	3.4
	(28.2)	(32.7)	(39.0)	(5.8)					
1990	74,029	7,725	3,820	11,605	23,175	10.4	49.4	32.9	3.3
	(18.4)	(30.1)	(47.6)	(12.8)	(30.8)				
1991	89,416	10,759	5,479	13,551	28,234	12.0	50.9	40.4	3.9
	(20.8)	(39.3)	(43.4)	(16.8)	(21.8)				
1992	102,797	12,426	5,873	16,999	32,024	12.1	47.3	34.5	3.9
	(15.0)	(15.5)	(7.2)	(25.4)	(13.4)				
1993	115,137	14,774	5,178	16,488	36,161	12.8	35.0	31.4	4.1
	(12.0)	(18.9)	(-11.8)	(-3.0)	(12.9)				
1994.2	119,261	14,646	5,088	15,608	34,134	12.2	35.0	31.4	4.3
	(3.6)	(-0.9)	(-1.7)	(-5.1)	(-5.6)				

註: 1. ()안은 증가율.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3. 中小企業金融에 있어서 商業어음割引의 重要性 및 問題點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企業間信用에의 依存度는 대기업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는 중소기업과의 거래시 어음을 통한 결제 관행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데에 기인한다. 어음결제 관행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 이러한 관행하에서 이루어지는 企業間 去來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어음을 適正規模로 割引 혹은 保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制度金融圈을 통한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은 재할인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원하는 규모보다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며¹⁴⁾, 이는 중소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商業어음割引은 원재료의 購入부터 製品의 販賣까지 自己資金의 負擔을 最小化하면서 신용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단기자금조달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商業어음割引이 중소기업에 대한 短期 運轉資金 貸出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1993년 말 현재 中小企業에 대한 商業어음 割引殘額은 약 16조원이며, 이 중 預金銀行이 82%인 13조원을 공급했으며 相互信用金庫가 15.6%인 2조 5천억원을 공급했다(〈表 III-10〉 참조). 전체 商業어음割引 가운데 中小企業에 대한 商業어음割引의 比重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1993년 말 현재 8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금은행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88.5%에 달하고 있다.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 가운데 商業어음割引이 차지하는 比重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재할인지원을 받고 있으며, 商業어음割引시장에서 최대의 공급자인 예금은행을 보더라도 商業어음割引 殘額의 增加率은 總與信 增加率 및 對中小企業 與信의 增加率을 上廻

14) 第II章 第2節의 論議를 참조하라.

〈表 Ⅲ-10〉 中小企業 商業어음割引市場의 規模

(單位: 10億원, %)

	全 體	預金銀行	投資金融	綜合金融	相互信用金庫	中 企 協
1983	1,595 (50.4)	1,154 (55.9)	146 (30.5)	6 (28.7)	288 (48.2)	-
1984	1,825 (55.8)	1,330 (58.0)	170 (63.4)	8 (26.1)	317 (46.5)	-
1985	2,232 (58.2)	1,655 (61.9)	132 (60.6)	2 (25.0)	443 (47.2)	-
1986	2,436 (57.2)	1,781 (61.1)	56 (33.7)	4 (25.3)	588 (50.8)	7 (100.0)
1987	3,125 (61.1)	2,287 (67.1)	87 (52.9)	3 (26.1)	710 (47.7)	38 (100.0)
1988	4,386 (65.8)	3,303 (73.8)	216 (56.1)	8 (33.3)	785 (45.9)	74 (100.0)
1989	5,870 (68.8)	4,616 (77.7)	127 (33.9)	2 (33.3)	1,012 (48.3)	113 (100.0)
1990	7,942 (73.3)	6,456 (83.6)	70 (36.8)	4 (29.5)	1,246 (45.6)	165 (100.0)
1991	11,929 (80.4)	9,625 (89.5)	108 (69.7)	5 (27.5)	1,917 (52.8)	275 (100.0)
1992	13,617 (80.3)	11,258 (90.6)	47 (51.6)	5 (29.2)	2,016 (48.9)	291 (100.0)
1993	15,948 (80.7)	13,080 (88.5)	57 (23.7)	5 (29.7)	2,492 (56.3)	314 (100.0)

註: 1. 생보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실적 자료가 없어 제외하였으며, 중기협회의 공제사업기금 2호대출은 1986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2. ()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전체상업어음할인).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 年度.

投資金融協會, 綜合金融協會, 相互信用金庫協會,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하여 왔으며, 그 결과 中小企業 與信에서 차지하는 商業어음割引의 比重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3년 말 현재 22.6%를 차지하고 있다(〈表 Ⅲ-11〉 참조). 商業어음割引시장에서 제2의 공급자인 상호신용금고의 경

〈表 Ⅲ-11〉金融機關別 中小企業에 대한 總貸出 및 商業어음割引의 現況

(單位: 10億원, %, 末殘基準)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預金銀行 總與信(A)	43,096	48,805 (13.2)	62,548 (28.2)	74,029 (18.4)	89,416 (20.8)	102,797 (15.0)	115,137 (12.0)
對中小企業與信(B)	16,938	20,910 (23.5)	27,768 (32.8)	35,666 (28.4)	43,799 (22.8)	49,490 (13.0)	57,819 (16.8)
對中小企業 商業 어음割引(C)	2,287	3,303 (44.4)	4,616 (39.8)	6,456 (39.9)	9,625 (49.1)	11,258 (17.0)	13,080 (16.2)
B/A	39.3	42.8	44.4	48.2	49.0	48.1	50.2
C/B	13.5	15.8	16.6	18.1	22.0	22.7	22.6
投資金融 總與信(A)	8,987	11,956 (33.0)	18,772 (57.0)	22,380 (19.2)	19,916 (-11.0)	20,857 (4.7)	33,324 (59.8)
對中小企業與信(B)	3,018	4,422 (46.5)	4,642 (27.6)	6,665 (18.1)	3,902 (-41.5)	4,044 (3.7)	2,939 (-27.3)
對中小企業 商業 어음割引(C)	87	216 (149.8)	127 (-41.4)	71 (-44.4)	108 (53.3)	47 (-56.7)	57 (22.3)
B/A	33.6	37.0	30.1	29.8	19.6	19.4	8.8
C/B	2.9	4.9	2.2	1.1	2.8	1.2	1.9
綜合金融 總與信(A)	762	1,487 (95.4)	920 (-38.1)	1,401 (52.2)	2,487 (77.5)	2,969 (19.4)	2,821 (-5.0)
對中小企業與信(B)	188	413 (119.4)	267 (-35.5)	372 (39.7)	717 (92.6)	996 (39.0)	844 (-15.3)
對中小企業 商業 어음割引(C)	3	8 (156.7)	2 (-77.9)	4 (152.9)	5 (9.3)	5 (4.3)	5 (6.1)
B/A	24.7	27.8	29.0	26.6	28.8	33.6	29.9
C/B	1.6	1.9	0.6	1.2	0.7	0.5	0.6
相互信用金庫 總與信(A)	4,689	5,315 (13.3)	6,898 (29.8)	9,581 (38.9)	12,787 (33.5)	15,287 (19.6)	18,348 (20.0)
對中小企業與信(B)	2,481	3,005 (21.1)	3,539 (17.8)	4,886 (38.1)	9,416 (92.7)	10,105 (7.3)	10,579 (4.7)
對中小企業 商業 어음割引(C)	710	785 (10.6)	1,012 (28.9)	1,246 (23.2)	1,917 (53.8)	2,016 (5.2)	2,492 (23.6)
B/A	52.9	56.5	51.3	51.0	73.6	66.1	57.7
C/B	28.6	26.1	28.6	25.5	20.4	20.0	23.6

註: 1. ()안은 증감률.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投資金融協會, 綜合金融協會, 相互信用金庫聯合會.

우에도 商業어음割引을 통한 중소기업지원의 비중이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23.6%(1993년 말 현재)를 점하고 있다. 반면에 投金社 및 綜金社의 중소기업에 대한 商業어음割引 실적은 아직 미미한 형편이다.

制度圈 金融機關에서 공급되는 중소기업대출 전체에서 商業어음割引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상승하여 1993년 말 현재 14.6%를 차지하고 있다(〈表 Ⅲ-12〉 참조).

〈表 Ⅲ-12〉 制度圈¹⁾ 中小企業貸出市場에서 商業어음割引의 比重

(單位: 10億원,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中小企業貸出規模(A)	25,580	36,190	47,536	57,372	81,136	95,631	109,516
中小企業어음割引(B)	3,125	4,386	5,870	7,942	11,929	13,617	15,948
B/A	12.2	12.1	12.3	13.8	14.7	14.2	14.6

註: 1) 예금은행 및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을 의미함.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은 개발기관, 投金 및 綜金社,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 리스회사 및 은행의 신탁계정을 포함함.

資料: 財務部, 韓國銀行, 投資金融協會, 綜合金融協會, 相互信用金庫聯合會.

IV. 商業어음割引의 不振 要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商業어음割引市場에서 中小企業의 최대 자금공급자인 예금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商業어음割引을 어떠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꾸준히 증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需要者인 中小企業은 현재의 割引水準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 원활한 商業어음割引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日本과 비교하여 볼 때도 商業어음割引을 통한 外債賣出債權의 現金化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하에서는 商業어음割引이 원활하게 확대되지 못하는 요인을 (i) 金融政策的 要因, (ii) 去來慣行上の 要因, (iii) 稅制上の 要因, (iv) 金融機關의 制度運用上の 要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金融政策的 要因

商業어음割引市場에서 최대의 자금공급자인 예금은행은 通貨創出機關으로서 通貨 및 金融政策의 주요 대상기관이 되어 왔다. 그 결과 예금은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産業政策의 目標을 수행하기 위한 政策金融을 확대하여 왔고, 통화관리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第2金融圈에 비하여 與·受信商品에 대한 金利規制를 오랫동안 받아왔다. 이와 같은 要因들은 결국 예금은행으로 하여금 收益性, 流動性, 安全性의 측면에서 다른 상품에 비하여 우수한 商業어음割引을 통한 자금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貸出財源을 不足하게 하였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要因들을 詳述한다.

가. 銀行의 과도한 政策金融 취급

그 동안 政府는 産業政策의 目標을 達成하고 고도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중소기업 및 농수축산업 등의 분야에 대한 所得補助의 차원에서 金融支援을 계속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예금은행은 통화당국을 포함한 政府의 직·간접적인 수단에 의하여 資産運用에 制約을 받아 왔으며, 그 중에서도 政策金融은 政府의 예금은행에 대한 與信運用 制約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말 현재 預金銀行의 金融資金을 財源으로 하는 政策金融의 규모는 약 26조 8천억원¹⁵⁾으로 예금은행 금융자금대출액 127조 1천억원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表 IV-1> 참조).

<表 IV-1> 預金銀行의 金融資金貸出 中 政策金融의 推移

(單位: 10億원,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金融資金(A)	45,262	58,347 (28.9)	69,258 (18.7)	83,811 (21.0)	96,425 (15.1)	108,091 (12.1)	127,066 (17.6)
政策金融 ¹⁾ (B)	11,029	13,376 (22.9)	16,376 (22.9)	19,109 (16.7)	21,985 (15.1)	24,657 (12.2)	26,792 (8.7)
B/A	24.4	22.8	23.6	22.8	22.8	22.8	21.1

註: 1. ()안은 증가율.

1) 금융자금대출 중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자금, 에너지절약시설자금, 주택자금, 농업자금, 수산업자금, 축산업자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 포함.

資料: 韓國銀行, 『調査統計月報』, 1995. 2.

15) 예금은행 대출금 중 일반자금으로 분류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만큼 政策金融의 規模는 過小評價되고 있다.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정책금융의 비중은 금융자금의 25%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84년~1988년 기간 동안 해외건설업·해운업 등의 쇠퇴산업 분야에 대한 不實企業 整理過程에서 일반은행들이 공급한 만기 10~20년 이상의 産業合理化 資金도 은행자금을 固定化하는 데 일조를 하였는데 이러한 資金도 政策金融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금은행의 과도한 政策金融 취급은 은행여신의 自律的 運用의 폭을 그만큼 制約할 수밖에 없으며 商業어음割引과 같이 우수한 대출상품의 운용가능한 財源을 不足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은행의 재할인이 이와 같은 과정에서 부족하게 된 은행의 商業어음割引 재원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은행들의 商業어음割引은 매우 높은 再割引依存度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表 IV-2〉 참조), 그 결과 한국은행의 流動性 調節能力을 크게 蠶食하게 되었다.

한편 어음決濟의 比重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거래관행을 보여 온 日本은 商業어음割引의 운용현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高度成長期였던 1970년 이전까지는 물론이고 1970년대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도 금융기관들이 매우 대규모의 商業어음割引을 해주었다. 全國銀行의 경우 總貸出金 對比 商業어음割引의 比重이 1970년대에는 20%를 上廻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에는 15% 정도로 하락한 후 계속 下向 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1994년 6월 말 현재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表 IV-3〉 참조).

日本 金融機關의 商業어음割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두드러진 特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日本經濟의 高度成長期였던 1955~1970년에 걸쳐서 商業어음割引은 금융기관 대출금의 30%를 초과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고도성장기에 기업들이 왕성한 資金需要를 외부금융에 의존함에 따라 財務構造가 상대적으로 脆弱하여 기업간 거래가 대부분 어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할인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商業어음割引 비중이 점차로 縮小되고 있는 것은 大企業部門의 留保利潤 蓄積으로 기업간 거래시 現金決濟의 비중이

〈表 IV-2〉 韓·日間 商業어음割引 實績 比較

(單位:%)

	再割引依存度 ¹⁾		再割引/中央銀行貸出金		再割引/本源通貨	
	韓 國	日 本	韓 國	日 本	韓 國	日 本
1971~1975	63.0	0.6	14.8	7.8	9.1	11.0
1976~1980	38.1	0.8	8.4	7.9	5.1	0.9
1981~1985	47.6	0.7	16.2	8.5	25.0	0.8
1986~1990	45.4	0.8	21.0	2.2	22.9	0.6
1991~1993	44.4	0.6	35.4	1.9	29.5	0.3
1994 ²⁾	34.7	0.7	32.6	2.4	26.4	0.3

註: 1) 재할인의존도=재할인/상업어음할인(한국:예금은행, 일본:전국은행)

2)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한도제 실시로 1994년 2월 자료를 이용하였음.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日本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높아져 상업어음의 발행규모 자체가 점진적으로 축소된 데 기인한다¹⁶⁾.

둘째, 금융기관의 商業어음割引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中央銀行의 再割引依存度は 전 조사기간에 걸쳐 1% 미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이룬다(〈表 IV-2〉 참조). 일본의 경우 政策金融이 별도의 公的 金融機關에 의해 취급됨에 따라 全國銀行들은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의 활용만으로도 商業어음割引을 충분히 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총대출금 대비 商業어음割引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發生한 어음의 70% 이상을 割引해 주고 있으며(〈表 II-12〉 참조), 이는 資金포지션 관리상 보유하는 부분 등을 감안하면 할인을 원하는 대부분의 商業어음이 割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6) 金俊經(1991) 참조.

〈表 IV-3〉 韓·日間 貸出金 對比 商業어음割引 實績 比較

(單位:%)

	韓 國						日 本				
	全體	預金 銀行	投資 金融	綜合 金融	生命 保險	相互 信用	全體	全國 銀行	信用 金庫	信用 組合	商工 組合
1971~1975	N.A	5.7	N.A	N.A	N.A	N.A	23.2	23.1	23.9	-	-
1976~1980	N.A	5.2	N.A	N.A	N.A	N.A	20.3	20.4	20.8	10.8	21.2
1981~1985	9.1	9.1	5.1	5.6	8.5	34.0	15.0	15.1	16.0	8.8	16.8
1986~1990	8.3	9.2	2.0	3.1	0.4	30.5	8.0	7.4	11.5	7.4	11.5
1991~1993	10.3	12.3	0.6	1.5	0.4	26.5	5.7	5.1	8.8	6.7	10.9
1994. 6	9.8	12.4	0.2	0.6	0.7	24.7	4.4	4.0	6.9	3.8	9.6

註: 1. 일본의 전국은행에는 도시은행, 지방은행, 은행신탁, 장기신용은행을 포함하였음.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 年度.

日本銀行, 「經濟統計年報」, 各 年度.

나. 銀行 爲主의 通貨管理

현행의 支給準備制度에 의하면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대해서만 高率의 支準率을 적용하고 있으며 非銀行金融機關의 預金類似債務에 대하여서는 現金支準制度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¹⁷⁾.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예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에 대해 11.5%의 지준율을 적용하고 있어 여타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美國 0~10%, 日本 0.05~1.3%, 獨逸 2~5%).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준율이

17)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예금자의 인출 또는 환매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로 지급준비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지급준비자산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유하게 되어 있는 통화금융기관과는 달리 은행예금, 통화채, 국공채 등 수익성자산의 보유가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은행의 지급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CD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은행신탁의 자산구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는데, 이는 은행이 CD와 신탁계정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 수익성자산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것은 自動再割引 및 海外部門을 통한 本源通貨 增加에 대처하여 기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데에 주로 기인한다.

規制金利下에서 이와 같은 銀行 中心의 支給準備制度는 은행의 수신 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非銀行金融機關과의 受信競爭에서 不利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금리가 자유화된다고 하더라도 支準 適用對象이 현재와 같이 예금은행의 예금상품에만 국한되는 한 非銀行金融機關과의 收益率의 差異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예금유치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相對的 劣位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예금은행의 預金計定으로부터 信託計定 및 非銀行金融機關으로의 資金離脫 현상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94년 11월 현재 非銀行圈 貯蓄 對比 銀行圈 總預金の 比重은 39.6%로서 계속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表 IV-4〉 참조). 물론 예금은행들은 기준예치에 대한 일종의 反對給付로서 한국은행 再割引 惠澤을 받고 있지만 이를 감안 하더라도 예금은행은 여전히 非銀行金融機關에 비해서 불리한 입장이다¹⁸⁾. 은행 受信擴大의 制約은 당연히 은행 貸出財源의 擴大를 制限할 수밖에 없고, 商業어음割引 財源의 擴大 역시 制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現行의 通貨管理方式에 의하면 통화당국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政府部門과 海外部門으로부터의 本源通貨 供給과 거의 自動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은행 再割引을 통한 金融部門으로부터의 本源通貨의 供給으로 인해 통화당국의 본원통화 관리 능력이 매우 제약적인 상황

18) 현재 政策金融 再割引으로부터 발생하는 銀行마진은 3.5%p[예:예금은행의 무역금융금리(8.5%) - 한국은행 재할인금리(5%)] 정도인 데 비해 支準預置에 따르는 機會費用은 10%를 훨씬 상회(예:1994. 1~6월 평균콜금리=11.6%)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1994년 6월말) 한국은행의 예금은행에 대한 대출금(15조 4,242억원)이 예금은행 支準預置金(9조 4,028억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기준예치에 따르는 實質的인 負擔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향후 支準率은 그대로 둔 채 한국은행 대출규모만 縮小해 나가면 支準負擔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劉炳夏·李柱卿(1994)을 참조.

〈表 IV-4〉 銀行圈과 非銀行金融機關의 受信 推移

(單位: 10億원,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1
銀行圈 總預金(A) ¹⁾	45,251	53,608	68,062	84,568	98,756	116,562	135,345
非銀行圈 貯蓄(B)	75,854	105,851	136,498	163,181	212,332	277,271	341,678
A/B	59.7	50.6	49.9	51.8	46.5	42.0	39.6

註: 1)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CD의 合計임.

資料: 財務部, 「財政金融統計」, 1995. 2.

이다. 실제로 통화당국은 이들 부문에서의 본원통화 공급이 목표수준을 벗어날 때 通貨安定證券 및 RP를 배정하여 本源通貨를 吸收하는 역할 밖에는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의 支準積立方式은 必要支準 計算期間과 積立期間 사이에 상당한 時差가 존재하여 조작목표인 支給準備의 조정을 통한 通貨量 目標을 달성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支準 마감일을 포함한 지준적립기간의 마지막 7일 동안 통화량은 이미 결정되고 이에 상응하는 支準現金需要도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통화당국의 어떠한 支準去來에도 불구하고 通貨量은 不變이기 때문이다. 즉 통화량이 목표수준을 벗어날 경우 통화당국은 銀行의 與信活動을 直接 規制함으로써 통화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通貨當局의 直接的인 統制 對象으로서 銀行의 與信運用은 制約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여신 축소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商業어음割引도 이와 같은 구조하에서는 은행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다. 商業어음割引金利의 硬直性

예금은행의 商業어음割引金利는 政策的으로 規制되어 왔기 때문에¹⁹⁾ 어음 발행인 및 할인 의뢰인의 信用度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 반영되지 않아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零細企業일수록 예금은행으로부터 충분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93년중 중소기업체제의 어음割引處別 構成比를 보면(〈表 IV-5〉 참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클수록) 預金銀行에의 依存度가 낮고(높고) 私債市場 등을 통한 할인비율이 높음(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은행의 商業어음割引에 대한 規制金利下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은 信用割當에 의해 예금은행권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행의 재할인 적격업체제도하에서 저리의 상업어음할인은 일종의 租稅인 화폐발행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우량한 재할인적격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중소기업집단 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表 IV-5〉 從業員 規模別 어음割引의 對象處別 實際 現況(1993年中)

(單位: %)

	銀 行	非銀行金融機關	其 他 ¹⁾	合 計
5 ~ 19人	27.8	20.9	51.3	100.0
20 ~ 49人	55.8	9.4	34.8	100.0
50 ~ 99人	69.7	3.3	27.0	100.0
100 ~ 199人	69.7	2.6	27.7	100.0
200 ~ 299人	69.7	4.7	25.6	100.0

註: 1) 사채업자할인, 지급수단활용, 만기일까지 소지하는 경우를 포함.

資料: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의 金融利用 隘路實態 分析」, 1993. 12.

19) 第3段階 金利自由化의 일부 早期施行으로 1994년 12월 1일부터 韓國銀行 再割引對象 政策資金이 部分的으로 自由化되었다. 이에 따라 商業어음割引金利도 각 은행의 자유금리인 「프라임레이트」(8.5~9.5%) 범위 내에서 自律的으로 決定하도록 되었다. 자유화 조치 이전의 재할인 대상 상업어음할인금리가 8.5%였으므로 은행의 「프

2. 去來慣行上の要因

가. 擔保爲主의 貸出慣行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金利規制 및 이로 인한 자금에 대한 慢性的인 超過需要 그리고 脆弱한 企業의 財務構造 등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擔保貸出의 慣行을 형성하여 왔다. 즉 金利規制下에서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등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금리 대신에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安全性을 도모하였고,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 상태에서 금융기관은 우량고객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擔保를 통해 債權을 確保하고자 하였다. 특히 부도위험이 높은 중소기업대출에 대하여 지나치게 낮은 저금리를 유지해 온 정책은 은행의 담보대출관행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요구의 정도가 심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高度成長過程에서 기업의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아 財務構造가 脆弱함에 따라 금융기관도 담보를 통해 채권확보를 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은 금리자유화가 상당히 진행된 현재까지도 별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擔保貸出의 慣行은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에게 더욱 큰 隘路要因이 되고 있으며(〈表 IV-6〉을 참조), 1994년 9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의 비중은 30.5%에 불과한 실정이다(〈表 IV-7〉 참조).

銀行에서 割引하는 어음의 대부분이 再割引適格어음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商業어음割引의 경우 예금은행의 對中小企業貸出에서 차지하는 비

라임레이트」 수준에 따라 0~1%P의 금리 「스프레드」가 허용된 셈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금리 「스프레드」로 기업의 信用度에 따른 金利差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는 없으므로 영세중소기업은 여전히 할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表 IV-6〉 第一銀行 貸出金の 對象別, 擔保別 構成比 (1993년 末 現在)

(單位: %)

	大 企 業	中 小 企 業	家 計	全 體
物 的 擔 保 貸 出	34.9	48.8	60.1	42.9
保 證 貸 出	16.8	10.8	2.3	12.0
信 用 貸 出	48.3	40.4	37.6	45.1
計	100.0	100.0	100.0	100.0

資料: 第一銀行, 鄭健溶(1994)에서 인용.

〈表 IV-7〉 預金銀行¹⁾ 中小企業貸出金の 擔保別 構成比

(單位: %)

	1988	1990	1992	1993	1994. 9
物 的 擔 保 貸 出	60.7	58.6	55.6	51.8	53.3
保 證 貸 出 ²⁾	13.1	15.0	15.1	18.3	16.2
信 用 貸 出	26.2	26.4	29.3	29.9	30.5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1) 시중은행·지방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만 포함.

2)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자금보증대출 포함.

資料: 韓國銀行 資金部.

중이 매우 높음(1993년 말 현재 22.6%, <表 III-11> 참조)을 고려할 때, <表 IV-7>과 <表 IV-8>은 한국은행 재할인대상 적격어음에 대해서도 信用에 의한 割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1994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預金銀行의 對中小企業 貸出 가운데 30.5%만이 信用貸出이고 약 69.5%가 物的擔保貸出 및 保證貸出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擔保條件別 어음割引額의 比重을 보면 역시 信用貸出이 32.2%에 불과하고 나머지 67.8%가 물적담보대출 및 보증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適格어음도 대부분 담보 및 보증대출 형식으로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表 IV-8〉 銀行에서의 擔保條件別 어음割引額 構成比

(單位: %)

	1988	1990	1992	1993
物的 擔保 貸出	60.6 (60.0)	48.0 (47.6)	50.9 (49.1)	47.4 (47.4)
保 證 貸 出	8.2	23.0	22.1	20.4
信 用 貸 出	31.2	29.0	27.0	32.2

註: 1. 보증대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지급보증대출을 포함.

2. ()안은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

資料: 國民銀行, 『中小企業 金融利用實態 調査報告書』, 各 年度.

한국은행의 再割引 適格業體가 發行背書한 어음을 去來銀行에 할인을 의뢰할 경우 담보없이 신용으로 割引하는 比率이 적고 담보제공한 할인한도 내에서 할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격어음 여부보다는 擔保提供 與否가 銀行割引의 중요한 條件이 되고 있다(〈表 IV-9〉 참조).

〈表 IV-9〉 適格어음의 割引 狀況

(單位: %)

	1991	1992	1993	1994
信用割引	15.2	20.5	14.4	15.6
擔保提供 割引限度 內 割引	52.2	55.7	66.0	76.4
割引 기피	7.7	7.1	8.0	3.3
모르겠음	24.9	16.7	11.6	4.9

資料: 中小企業協同中央會, 『中小企業의 金融利用 隘路實態 分析』, 各 年度.

실제로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가 調査한 바에 의하면, 은행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체가 商業어음割引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이유로서 擔保不足이라는 응답이 13.2%를 차지하고 있다(〈表 IV-10〉 참조).

〈表 IV-10〉 銀行에서 商業어음割引이 원활하지 못한理由

(單位: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割引限度의 소진	28.8	36.2	31.5	30.4	30.9	48.6
與信凍結 및 與信規制	15.8	19.3	9.2	7.2	8.5	7.0
擔保不足	10.4	11.3	6.0	11.6	15.5	13.2
90日 以上の 長期어음이므로	12.0	10.2	15.9	18.8	21.2	13.3
非適格業體에서 發行한 어음이므로	9.1	11.0	8.7	9.7	13.5	10.2
小額어음이므로	4.8	1.7	2.7	4.1	1.9	1.9
銀行에서 割引을 해보지 않음	19.1	10.2	26.0	18.2	8.5	5.8

資料: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의 金融利用 隘路實態 分析』, 各年度.

나. 大企業의 不公正한 去來實態

중소기업이 수취한 어음 중 決濟期日이 91일 以上인 어음이 62.4% (1993년)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은행은 이같은 長期어음에 대해 할인을 꺼리고 있다. 중소제조업체의 대부분이 下都給業體이고 대기업에서 納品代金에 대한 어음發行을 遲延하거나 滿期가 長期인 어음을 發行하여 이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下都給去來 公正化에 關한 法律」을 통하여 (i)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納品代金を 決濟토록 하고, (ii) 下都給代金を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기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割引料는 原事業者가 負擔하도록 하며, 납품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어음으로 줄 경우 할인료 계산시점은 납품일자로부터 61일째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기업의 어음決濟 延期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관행이며, 중소도급업자가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不利益을 公正去來委員會 등에 신고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國民經濟制度研究院이 종업원 20인 이상의 기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不當行爲 가운데 어음결제 연기가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表 IV-11〉 참조).

〈表 IV-11〉 中小企業이 大企業으로부터 받은 不當行爲

(單位: %)

	어 음 決濟延期	原 資 材 供給制限	下 都 給 契約制限	販 賣 網 封 鎖	人 力 스카우트	없 다
實 質 的 支 配	38.9	16.4	14.1	9.1	0	21.4
垂 直 系 列	35.2	11.0	11.9	2.4	2.1	37.5
競 爭 關 係	26.2	12.1	1.8	30.0	12.4	17.4
無 關 係	16.6	3.9	0.3	4.5	0	74.7
全 體	34.3	11.3	9.2	7.7	3.1	50.0

註: 電氣·電子, 自動車産業에 대한 實查調査 分析 結果임.

資料: 國民經濟制度研究院, 『競爭力提高를 위한 企業環境 改善』, 輿論分析資料 91-01, 1991. 11.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不公正한 去來慣行의 결과²⁰⁾ 중소기업이 수취하는 어음 중 만기가 91일 이상인 장기어음의 비중이 대단히 높아서 은행에서의 商業어음割리이 원활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表 IV-10〉 참조). 실제로 경기호황으로 대기업의 내부유보가 크게 증가한 기간 동안에도 만기 91일 이상인 장기어음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보다는 불건전한 거래관행의 결과로 보아야 함을 示唆한다(〈表 IV-12〉 참조).

20) 물론 下請發走企業의 財務構造가 취약함에 따라 母企業이 下請企業에 대한 納品代金を 長期어음으로 지급하는 측면도 있다(金俊經, 1991).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에 있어서 交渉力이 우위에 있는 하청발주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支給慣行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法的인 作成與否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인과 의뢰인이 공모할 경우 稅金計算書의 虛偽作成 與否를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전혀 判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재 所得稅 納付對象 事業者가 帳簿를 備置·記帳하는 비율은 대단히 낮은 실정이다. 1992년 말 현재 소득세 납세인원(사업자) 281만 1,346명 중 10.95%인 30만 8,218명만이 장부를 備置·記帳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確定申告對象 人員의 32.25%에 해당하는 비율로서 계속 下向 趨勢에 있다(〈表 IV-12〉 참조). 또한 1992년 확정신고인원 93만 5,318명을 記帳義務 구분별로 보면 複式簿記 義務者가 10.4%, 簡易帳簿 義務者가 18.1%, 日記帳 義務者가 71.5%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1억 원 미만인 확정신고자가 무려 75.1%를 차지하고 있어(국세청, 『국세 통계연보』, 1993), 장부를 備置·記帳하지 않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이들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表 IV-13〉 年度別 記帳人員 推移

(單位: 千名, %)

	1988	1989	1990	1991	1992
納稅人員(A)	2,073	2,171	2,367	2,593	2,811
確定申告 對象人員(B)	707	652	743	834	955
記帳人員(C)	240	253	269	305	308
納稅人員에 대한 記帳比率(C/A)	11.57	11.65	11.36	11.76	10.95
申告對象人員에 대한 記帳比率(C/B)	33.94	38.81	36.2	36.57	32.25

資料: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各 年度.

이와 같은 稅金計算書의 變則發行 및 偽裝과 零細中小企業의 記帳能力 不足은 해당 기업의 어음割引을 스스로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지

만, 근본적으로는 이들 기업으로 하여금 기장을 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하고 수수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租稅制度 및 行政體制가 未備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성실하게 기장을 하고 조세를 납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期待利益이 期待費用보다 작기 때문인 것이다. 이때 기대이익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眞正性を 확보함으로써 私債市場이 아닌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低利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의 可用度 및 金利費用上的 이득 및 지급이자에 대해 損金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所得稅 輕減의 利得²²⁾이며 期待費用은 매출·매입규모의 노출로 인한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額의 增加 및 會計費用을 들 수 있다. 성실한 납세의 기대이익이 기대비용보다 크도록 하고, 納稅意識을 鼓吹하는 稅制 및 稅政上的 改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의 금융기관을 통한 어음할인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²³⁾.

4. 金融機關의 制度運用上的 要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수 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商業어음割引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割引限度의

22) 현행 稅法에 의하면 債權者가 불분명한 私債의 이자는 소득금액계산상 損金에 算入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法人稅法 第16條, 所得稅法 第48條). 債權者가 불분명한 私債는 (i) 債權者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借入金 (ii)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貸與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iii)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不分明한 차입금을 포괄한다(法人稅法 施行令 第33條, 所得稅法 施行令 第99條). 私債去來時 대역자의 신분을 숨기고 이루어지는 것이 常例이므로 私債에 대한 支給利자는 통상 損金으로 算入되지 않는다.

23) 현행의 상거래 관행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한 진성어음의 식별은 별의미가 없으므로 진성어음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姜柄喆, 1993). 즉 개별 은행이 韓國銀行의 再割引없이 자체자금으로 할인하는 어음에 대해서는 融通어음이라도 할인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금 운용에 대한 事前的·事後的 檢査가 거의 불가능한 운전자금의 비중이 매우 높아, 자금 흐름이 非生産的인 方向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당분간 眞性어음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不足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表 IV-9〉 참조). 이는 금융기관의 할인한도 설정방법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1993년 4월부터 ‘商業어음割引 및 再割引 取扱規程’을 廢止하고, 한국은행의 ‘商業어음 再割引 取扱規程’만을 制定·措置하여 은행의 商業어음割引과 관련한 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들은 과거의 할인한도 설정 방법에 의한 할인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撤廢된 商業어음割引 取扱規程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동일 업체에 대한 適正割引 規模를 설정하도록 하고, 동일 업체에 대한 적정할인 규모는 總賣出額 規模, 받을어음 平均殘額, 賣出額 中 外貨獲得實績 등을 綜合審査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i) 최근 決算日 現在 合計殘額試算表에 의한 과거 1년간 받을어음 금액의 1/4 범위 내(중소기업의 경우는 1/2 범위 내), (ii)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附加價値稅確定(豫定) 申告書에 의한 최근 3個月 賣出額에 당해 업체의 받을어음 受取率(과거 1년간 받을어음금액/과거 1년간 매출액)을 곱한 금액 범위 내, (iii)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년간 받을어음 금액의 1/4 범위 내, (iv) 決算資料가 없는 營業實績 1년 미만의 신설 대기업과 최근 결산 이후 새로 받을어음 實績이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課稅標準證明原 또는 附加價値稅 確定(豫定) 申告書에 의한 최근 3個月 賣出額의 1/2 범위 내이다.

이와 같은 할인한도 설정방법에 의하면 割引限度가 전적으로 과거의 賣出額 및 받을어음의 規模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景氣沈滯期에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와 같은 割引限度 設定履行에 그 構造的인 原因이 있다. 왜냐하면 景氣沈滯期에는 매출액 규모는 줄고 받을어음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높게 마련인데, 過去에 實現된 매출액 및 받을어음의 규모에 의해 設定된 割引限度가 증가한 받을어음을 消化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割引限度가 받을어음 금액의 1/4 범위 내(중소기업의 경우 1/2 범위 내)로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銀行을 통한 어음의 할인은 이 비율을

構造的으로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과거의 할인한도 설정방법에 의한 割引慣行이 아직도 유지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할인한도의 부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中小製造業體의 받아들여음 규모는 1988년~1993년 기간중 年平均 28.4%의 增加率을 보인 반면 賣出額은 22.0%만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 받아들여음 규모의 증가율이 매출액규모 증가율을 上廻하고 있으며, 賣出額 對比 받아들여음의 비중 역시 최근 들어 增加하는 趨勢에 있다 (<表 IV-14> 참조).

<表 IV-14> 中小製造業體의 받아들여음 및 賣出額 規模의 推移

(單位: 10億원,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年平均
받아들여음(A)	1,145	1,317	2,091	2,135	2,016	3,459	(28.4)
		(15.0)	(58.8)	(2.1)	(-5.6)	(71.6)	
賣出額(B)	28,057	26,855	41,446	47,174	48,233	69,496	(22.0)
		(-4.3)	(54.3)	(13.8)	(2.2)	(44.1)	
A/B	4.1	4.9	5.0	4.5	4.2	5.0	4.6

註: 1. ()안은 증감률.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V. 商業어음割引 活性化를 위한 金融政策의 改善方向

第IV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商業어음割引이 不振한 것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온 金融 및 租稅政策과 去來慣行 등 構造的인 要因에 기인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들의 해결을 통해 商業어음割引의 活性化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對症療法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는 割引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를 더욱 惡化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商業어음割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²⁴⁾. 따라서 商業어음 및 이의 割引이 지니는 經濟的 意義를 고려하여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구조적인 要因을 해결함으로써 商業어음割引이 活性化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商業어음割引의 活性化를 위한 金融政策의 方向을 모색하여 보자.

1. 政策金融의 財政移管 및 再割引制度的 改善

은행이 자체조달자금 및 한국은행의 재할인에 의해 조성되는 金融資金에 의한 政策金融의 財政資金으로의 移管을 통하여 은행의 여신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商業어음割引을 위한 財源이 확충되도록 하

24)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재할인비율을 일시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재할인대상어음을 만기 120일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對症療法的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 일시적으로 상업어음할인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증가시켜서 中央銀行의 通貨管理能力을 과도하게 制約함으로써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었던 것이다.

여야 한다. 또한 政策金融의 상당한 부분이 한국은행의 재할인제도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으므로 政策金融의 財政移管은 재할인제도의 개편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金融資金에 의한 政策金融의 財政移管 및 재할인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치는 이미 취해진 바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들 조치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보완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 政策金融制度 및 韓國銀行 再割引制度의 改編 內容

1994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政策金融의 縮小·整備方案과 연계하여 대출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改編 內容을 보면 금융기관의 商業어음割引, 貿易金融, 素材·部品 生産資金, 地方中小企業資金 등 일상적 興信活動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은 件別 自動再割引方式을 廢止하고 金融機關別 總額限度制(단, 지방중소기업자금은 한국은행 지점별 한도제)로 전환하였다. 그 밖의 對金融機關 資金支援은 지준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一時不足資金 支援制度만 남기고 모두 廢止하였다. 다만 農水蓄産어음擔保貸出은 계속 自動再割引方式으로 운용하되 1994년부터 향후 5년간 점차 財政으로 移管하고 財政支援의 확대에 맞추어 지원비율을 段階的으로 下向 調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輸出産業設備金融, 技術開發資金, 公害防止施設資金, 中小企業製品需要者金融 등 중소기업지원자금은 新規 取扱을 중단하여 財政으로 이관하고(이관과 함께 ‘中小企業基盤造成資金’으로 통폐합하였음) 기존 取扱殘額에 대해서만 滿期까지 支援하게 되며, 防衛産業支援金融과 流動性 調節資金(B₁)은 廢止하도록 하였다.

한편 수출산업설비금융, 기술개발자금, 공해방지시설자금, 수요자금융 등 중소기업 관련 자금(中小企業基盤造成資金)의 取扱機關을 一般銀行, 企業銀行, 國民銀行에서 기업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등의 特殊銀行으로 移管함으로써 일반은행의 自體資金 負擔을 특수은행의 자체자금 부담으로 轉換하도록 하고 있다.

〈表 V-1〉 政策金融制度 및 再割引制度의 改編 內容

(單位: 億원, %)

	從 前			改 編 內 容
	支援比率	金利	取扱實績 ¹⁾	
商業어음再割引	50	5	50,876	총액대출제로 운영 · 상업어음재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금융 기관별 한도제로 운용
貿易金融	50 ²⁾	5	10,445	
素材·部品産業運轉資金	50	5	5,205	· 지방중소기업자금: 한국은 행 지점별 한도제로 운용
地方中小企業資金	50	5	16,283	
農事資金	50	3	3,756	94년 이후 5년간에 걸쳐 지원 비율을 연차적으로 인하조정 하고 이를 재정융자로 전환 (현행지원비율: 농사자금 45%, 수산자금 45%, 축산자 금 30%)
水産資金	50	3	2,469	
畜産資金	40	5	990	
輸出産業設備金融	60	5	12,384	· 폐지(신규취급분은 재정자 금으로 지원) · 취급기관을 시·지방·기업· 국민에서 기업·국민·산은·장 은 등으로 단계적 이관
技術開發資金				
公害防止施設資金	50	5	3,677	· 일반은행 자체자금에서 특 수은행 자체자금으로
需要者金融				
防衛産業支援金融	50	5	58	폐지
流動性調節資金(B ₁)	-	6	9,335	
에너지節約施設資金	-	5	38	금융기관여신 만기도래시 회수
農漁家私債對替資金	-	3	1,876	
産業合理化關聯資金	-	5	8,846	단계적으로 회수
産業構造調整資金	-	3	2,501	
投信社支援資金	-	3	21,500	
日時不足資金貸出(B ₂)	-	콜금리+2%	0	종전대로 유지

註: 1) 1994년 2월 말 현재.

2) 비계열 대기업은 30%.

나. 改編內容에 대한 評價

일반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자금에 의한 政策金融의 축소와 유동성 조절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總額限度制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내용은 원래의 취지와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총액한도제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選別金融機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총액한도와 금융기관별 한도가 설정됨으로써 재할인제도의 정책금융 지원이 기본기능으로 유지되고 있고 流動性 調節機能은 여전히 예전과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매우 制約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총액한도제 도입 이후인 1994년 6월 말 현재 한국은행의 전체 재할인 중 95.7%가 政策金融 支援資金이고 나머지 4.3%만이 流動性 調節資金으로서, 총액한도제 도입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表 V-2> 참조). 이는 총액한

<表 V-2> 韓國銀行 再割引 規模 推移

(單位: 億원, %)

	1987	1989	1991	1992	1993	1994. 6
政策金融支援資金	98,802 (96.7)	90,669 (93.3)	126,810 (97.7)	160,412 (97.6)	149,876 (94.2)	147,921 (95.7)
商業어음再割引	16,201	25,880	54,787	58,728	51,781	-
貿易金融	11,331	6,396	9,882	10,355	10,549	-
農水畜産資金	2,608	5,670	4,138	4,748	5,078	11,127
一般資金(A資金)	68,109	52,670	57,923	57,507	56,401	29,309
其他 ¹⁾	552	53	80	74	67	-
特融(投信社)	-	-	-	29,000	26,000	21,500
總額限度貸出	-	-	-	-	-	85,985
流動性調節資金(B資金)	3,331 (3.3)	6,536 (6.7)	3,003 (2.3)	3,873 (2.4)	9,302 (5.8)	6,617 (4.3)
計	102,133 (100.0)	97,205 (100.0)	129,713 (100.0)	164,285 (100.0)	159,178 (100.0)	154,538 (100.0)

註: 1. ()안은 구성비.

1) 방위산업지원자금 등.

資料: 吳世萬·朴成峻·申雲(1994)에서 인용.

도 대출대상인 상업어음재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지방중소기업자금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재할인지원이 총액한도제 도입 이전의 재할인 비율(50%)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재할인 규모의 약 55.6%에 달하는 總額限度貸出이 전혀 유동성 조절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예금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금융자금에 의한 政策金融의 비중도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表 IV-1〉 참조). 금융자금에 의한 政策金融의 대부분이 再割引 對象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재할인방식이 지속될 경우 예금은행 및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縮小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 再割引을 통한 政策金融制度의 改善方向

再割引制度의 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할인제도를 정책금융 공급기능에서 유동성 조절기능으로의 회복을 위한 원만한 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再割引制度를 산업정책의 수단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수단으로 본래의 기능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상화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여 보자.

우선 再割引制度를 통하여 지원되고 있는 정책금융의 수혜대상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여부와 그 수단의 확보이다. 재할인대상 자금 가운데 농수축산자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그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財政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총액한도제의 도입과 함께 기술개발자금, 수요자금융 등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 이미 中小企業基盤造成資金으로 통합되어 財政으로 이관된 바 있다. 그러나 소재·부품자금과 지방중소기업자금은 여전히 총액한도 대출 대상에 포함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이들 자금 역시 中小企業基盤造成資金과 통합하여 재정자금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원리에 합당할 것이다.

한편 상업어음재할인과 무역금융은 이들 자금이 實物去來를 뒷받침하

는 眞性어음으로서 성장통화의 공급이라는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인플레이 압력 없이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자금으로서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계속하여 총액 한도의 대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²⁵⁾. 다만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어음만이 재할인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중소기업이 취급한 어음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은행 및 상호신용금고 등 중소기업 전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財政이 利差를 보전함으로써 어음할인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제안의 배경을 설명하면 우선 향후 총액한도가 축소되고 정책금융금리가 완전자유화되면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만이 은행의 할인대상이 되고, 여기서 배제되는 중소기업들은 제2금융권 내지 私金融市場에서 고금리로 할인을 받거나 아예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급격한 금융부담의 상승을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줌으로써 금융자율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상업어음할인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中小企業銀行의 특수은행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아직 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中小企業銀行의 민영화는 당분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5) 金後經, 文字植, 金世炫(1993)은 동일한 이유에서 상업어음 및 무역금융을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 자금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자동재할인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수단이 거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자동재할인에 의한 수동적인 본원통화공급보다는 중앙은행이 신축적으로 총액한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6) 또한 향후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 조절로의 이행시 재할인제도가 유동성조절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때 국제시장의 발달이 여의치 못한 경우 상업어음, 무역어음(표지어음 포함), 금융채 등을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공개시장 조작대상이 되는 채권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적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 단계에 가서는 대기업의 어음 역시 재할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通貨管理方式의 改善

우선 支準賦課對象 債務를 현행 第2金融圈에서 취급하는 預金類似商品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금은행과 第2金融圈의 公正한 競爭을 誘導하고 예금은행의 수신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²⁷⁾. 이와 함께 기준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은행의 자산운용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M₂B²⁸⁾에 포함되는 第2金融圈의 受信에 대해서 支準을 賦課하고 동시에 이들 기관에게 한국은행의 대출창구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기준적립방식과 본원통화를 통한 통화량의 관리방식은 적어도 기준마감일을 포함한 일주일간 兩立하기 어려우므로 支準計算期間과 支準積立期間의 時差를 줄이거나 金利指標에 의한 間接通貨管理方式으로 移行할 필요가 있다.

3. 第3段階 金利自由化의 日程調整

가. 商業어음割引 關聯 第3段階 金利自由化 措置의 內容

제3단계 금리자유화의 부분적 시행내용 중 商業어음割引과 관련된 조

27)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유사채무까지 支準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美國은 1980년 기준대상기관을 聯準加盟 상업은행에서 모든 상업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신용조합 등 貯蓄機關까지 擴大하였다. 日本의 경우도 1960~1970년대에 걸쳐 기준대상기관을 은행에서 상호은행, 신용금고, 농림중앙금고 등으로 擴大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금 외에 금융채, 금전신탁(原本保存形), CD 등을 支準賦課 對象債務에 포함시켰다. 또한 獨逸 및 臺灣도 상업은행 외에 저축은행 등의 預金類似 商品에 대해 支準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劉炳夏·李柱卿(1994)을 참조.

28) 현재 M₂B에 포함되는 非通貨金融機關의 短期性 負債에는 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의 要求拂預金과 居住者外貨預金, 投金社, 綜金社의 信託型 證券貯蓄,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 證券會社의 BMF, 相互信用金庫의 普通賦金預受金, 相互金融의 別單·普通·自立預託金 등이 포함된다.

치는 두가지가 있었다. 첫번째 조치는 7월부터 銀行圈에 表紙어음制度를 導入할 수 있게 하였고 두번째 조치는 12월부터 商業어음 割引金利를 部分的으로 自由化한 것이다. 표지어음은 은행이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商業어음이나 무역어음을 분할 또는 통합하여 고객에게 賣出하는 어음으로서 표지어음의 근거가 되는 原어음은 賣出銀行이 保管하고 同行을 支給人으로 하는 새로운 約束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매출이 이루어진다.

은행권에 표지어음제도를 허용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²⁹⁾. 먼저 投金社와 綜金社의 경우에는 이미 1989년에 표지무역어음, 1992년에 표지팩토링어음제도가 각각 시행중에 있었으나 은행의 경우에는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의 實物讓渡를 하는 매출방식만이 허용되고 있어 투자자의 입장에서 額面金額과 滿期面에서 規格化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 따라서 원어음의 할인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銀行의 受信競爭力 提高의 측면에서도 별 기여를 할 수 없었다³⁰⁾. 또한 총액대출제의 실시로 향후 총액한도의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은행으로 하여금 兩어음의 割引財源을 自體的으로 擴充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한편 12월부터는 再割引對象 商業어음에 대한 할인금리가 부분적으로 자유화되었다. 즉 재할인 대상 상업어음의 할인금리가 固定金利인 8.5%에서 각 은행의 自由金利인 「프라임레이트」(prime rate)(8.5~9.5%)범위 내에서 自律的으로 決定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의 배경은 한국은행의 총액대출제도에 의한 총액한도의 축소에 따른 調達費用의 增加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할인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9) 전한백(1994)을 참조.

30) 표지어음매출실적은 <表 V-3>을 참조.

나. 商業어음割引 關聯 第3段階 金利自由化措置에 대한 評價

은행권에 표지어음의 도입은 銀行의 受信構造에 큰 變化를 야기하였다. 우선 은행권에 표지어음이 도입되면서 은행권의 수신증가율이 비은행권의 수신증가율을 상회하였다. 전체 금융기관의 수신은 1994년 10월 20일 현재 334조 2,846억원으로 표지어음 도입시점인 1994년 7월 말에 비해 5.2% 증가하였는데, 銀行圈의 受信(= 總預金+CD+金錢信託+其他受信)은 5.6%, 非銀行圈의 受信은 4.2% 증가한 것이다(〈表 V-3〉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이 은행권의 수신증가율이 비은행권의 수신증가율을 상회한 것이 表紙어음의 도입에 기인한 것인지는 현 단계에서는 불명확하다. 은행권에 표지어음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 내에서는 자금이 양도성예금증서(CD)에서 표지어음쪽으로 大幅 移動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그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CD가 7월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인 데 비해 표지어음은 큰 폭으로 늘어남으로써 受信 成長을 主導하였다. 은행권의 표지어음은 1994년 7월 말 이후 계속 늘어나 1994년 10월 20일 현재 1조 8,729억원을 기록하여 1994년 7월 말의 4,954억원에 비해 278.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CD는 1994년 7월 말 이후 계속 줄어들어 1994년 10월 20일 현재 17조 7,761억원을 기록하여 1994년 7월 말의 20조 2,683억원보다 12.30% 감소함으로써 표지어음이 CD를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銀行圈의 表紙어음 賣出이 急增勢를 보인 것은 은행권의 표지어음 賣出金利가 年 12.0%를 유지함으로써 유사상품인 CD 發行金利 11.5%(91~180일물 기준)보다 높아 金利競爭力을 지닌 데다가 CD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표지어음 매출을 통해 수신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에 반해 은행권의 표지어음 도입이 非銀行圈의 資金移動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의 표지어음 賣出金利가 제2금융권의 경쟁상품에 비해 아직까지는 金利競爭力이 뒤떨어지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즉 投金社의 表紙어음은 12.0~14.3%

〈表 V-3〉 表紙어음 導入 以後 金融關係 受信實績 推移(末殘基準)

(單位: 10億원, %)

	金融機關 受信實績					金融機關 受信 增加率			
	1991	1992	1993	1994. 7	1994. 10. 20	1991~1992	1992~1993	1993~1994. 7	1994.7~1994.10.20
銀行團(A) ¹⁾	127,152 (73.4)	166,775 (73.3)	199,474 (70.8)	222,101 (69.9)	234,596 (70.2)	31.2	19.6	11.3	5.6
總預金	74,632	86,627	99,358	108,033	112,163	16.1	14.7	8.7	3.8
要求拂 ²⁾	13,744	15,900	16,866	16,752	17,659	15.7	6.1	-0.7	5.4
貯蓄性	60,888	70,727	82,492	91,281	94,504	16.2	16.6	10.7	3.5
讓渡性預金證書	9,940	11,943	16,500	20,268	17,776	20.2	38.2	22.8	-12.3
金錢信託	42,150	67,272	82,848	91,920	101,362	59.6	23.2	11.0	10.3
家計金錢信託	8,066	10,542	17,284	21,559	21,677	30.7	64.0	24.7	0.5
企業金錢信託	6,267	6,807	10,093	10,847	11,003	8.6	48.3	7.5	1.4
開發信託	8,809	15,059	15,209	15,052	26,335	71.0	1.0	-1.0	75.0
特定金錢信託	3,725	5,394	6,257	12,777	16,201	44.8	16.0	104.2	26.8
其他	15,283	29,470	34,005	31,685	26,146	92.8	15.4	-6.8	-17.5
其他受信	430	933	768	1,880	3,295	117.0	-17.7	144.8	75.3
商業어음賣出	7	79	90	70	63	1028.6	13.9	-22.2	-10.0
運賃債賣渡	423	854	678	1,315	1,359	101.9	-20.6	94.0	3.3
표지어음賣出	-	-	-	495	1,873	-	-	-	278.4
非銀行團(B)	46,023 (26.6)	60,828 (26.7)	82,240 (29.2)	95,687 (30.1)	99,686 (29.8)	32.2	23.8	12.8	4.2
投資金融 ³⁾	17,675	22,491	32,025	38,735	42,436	27.2	42.4	21.0	9.6
發行어음	1,346	805	412	383	359	-40.2	-48.8	-7.0	-6.3
CMA 預託金	6,101	6,111	5,109	6,048	6,106	0.2	-16.4	18.4	1.0
어음賣出	10,228	15,575	26,504	32,304	35,971	52.3	70.2	21.9	11.4
표지어음賣出 ⁴⁾	-	-	544	7,494	7,997	-	-	1277.6	6.7
投資信託	25,020	33,075	45,377	52,904	52,478	32.2	37.2	16.6	-0.8
公社債型收益證券	17,074	25,225	38,179	42,815	41,329	47.7	51.4	12.1	-3.5
株式型收益證券	7,347	7,407	6,953	9,826	10,807	0.8	-6.1	41.3	10.0
信託型證券貯蓄	599	443	245	263	342	-26.0	-44.7	7.3	30.0
證券會社	3,328	5,262	4,838	4,048	4,772	58.1	-8.1	-16.3	17.9
顧客預託金	1,192	2,195	2,491	2,765	3,529	84.1	13.5	11.0	27.6
BMF	703	580	681	634	548	-17.5	17.4	-6.9	-13.6
R P	1,433	2,487	1,666	649	695	73.6	-33.0	-61.0	7.1
金融機關合計(A+B)	173,175 (100.0)	227,603 (100.0)	281,714 (100.0)	317,788 (100.0)	334,285 (100.0)	31.4	23.8	12.8	5.2

註: 1. () 안은 금융기관 총수신 대비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비중임.

1) 은행권=예금은행.

2) 실세요구불예금임.

3)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실적임.

4) 표지어음매출은 표지무역어음과 표지팩토링어음의 합계임.

資料: 韓國銀行, 投資金融協會, 證券協會

(91~180일물 기준), 證券社의 還買條件附債券(RP)은 14.0~14.5% (60일~1년물 기준)의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1994년 7월말에 비해 각각 6.71%와 7.12% 증가한 것이다.

이상을 놓고 볼 때 은행권에 表紙어음의 導入은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資金移動에 별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銀行圈 內部에서 CD로부터 표지어음으로 자금이동이 있었을 뿐 銀行圈의 受信高 提高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은행에 재할인을 의뢰한 어음은 발행년도 산정대상에는 포함되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이 아니므로 賣出對象에서 除外된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적격어음을 재할인 의뢰하는 것이 表紙어음化하여 매출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표지어음매출은 總額限度를 超過하는 適格어음과 非適格어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총액한도의 축소에는 반드시 재할인 대상 商業어음割引金利의 완전자유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商業어음割引이 매우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할인 대상 할인금리의 부분자유화 조치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改善方向

향후 총액한도의 축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表紙어음賣出이 보다 活性化됨으로써 商業어음割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再割引對象 어음에 대한 割引金利를 早期에 完全 自由化하고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 차등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商業어음割引의 양적인 확대가 가능해지며, 金融機關은 자체자금 조달비용을 고려하여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도에 따른 金利差等의 확대로 심사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貸出金利의 실세화로 꺾기관행을 개선할 수 있게 되며, 한국은행의 再割引 比率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확

대됨으로써 韓國銀行의 신축적인 通貨管理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割引金利의 완전자유화와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再割引適格業體制度의 폐지이다. 재할인적격업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체 심사에 따라 대출대상을 선정하고, 그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포함한 대출조건을 自律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商業어음割引을 실질적으로 商業金融化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할인적격업체제도의 폐지는 割引金利 自由化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表紙어음의 發行한도, 만기, 최저발행금액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증권사 및 단자회사를 표지어음의 매매·중개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표지어음의 流通市場의 發達을 위한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4. 信用保證制度의 擴充

중소기업에 대한 信用貸出의 擴大는 금융정책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업무측면에서도 長期的인 對應方案이 강구될 必要가 있지만 短期的으로는 信用保證制度를 擴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³¹⁾.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政府出捐의 擴大를 통하여 신규보증 능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경기침체가 시작된 1990년 이후 신용보증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다가 1992년에는 代位辨濟의 급증에 따른 보증 능력의 감소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93년 이후에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倒産 防止를 위한 기본대상 확충으로 보증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保證運用倍數(保證殘額/基本財産)가 14.4배(1994년 9월 말 현재)로 法定限度인 15배에 근접하고 있어 신규보증 취급이 어려운 실정이다(〈表 V-4〉 참조). 또한 신용보증기관의 재원액 중 政府出捐金

31) 중소기업에 대한 信用貸出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鄭健溶(1994)을 참조.

의 비중은 29.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金融機關의 出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財政의 役割이 매우 未洽한 상태이다(〈表 V-5〉 참조). 따라서 정부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은 金融機關의 출연분 이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眞性어음임에도 불구하고 담보부족으로 할인을 받지 못하는 어음에 대해 보증여력을 높인다. 이와 함께 全額保證制度를 部分保證制度로 전환하여 은행의 심사기능을 스스로 제고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表 V-4〉 信用保證實績의 推移

(單位: 億圓, %, 倍)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9
保證殘額(A)	41,054	60,951	80,478	84,349	107,208	108,876
基本財産(B)	6,507	7,433	8,114	7,228	7,545	7,545
運用倍數(A/B)	6.3	8.2	9.9	11.7	14.2	14.4

資料: 信用保證基金, 『保證月報』, 1994. 11.

技術信用保證基金, 『技術保證月報』, 1994. 11.

〈表 V-5〉 信用保證機關에 對한 出捐 現況(1994年 11月 末 現在)

(單位: 億圓, %)

	信用保證基金	技術信用保證基金	計
政 府	5,476 (26.7)	2,770 (36.1)	8,246 (29.2)
金 融 機 關	15,064 (73.3)	4,913 (63.9)	19,977 (70.8)
計	20,540	7,683	28,223

註: 1. ()안은 비중.

資料: 信用保證基金 및 技術信用保證基金.

參 考 文 獻

- 姜炳皓, 『우리나라 流通金融의 現況과 活性化 方案』, 大韓商工會議所, 1993. 6.
- 國民經濟制度研究院,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업환경개선』, 여론분석자료 91-01, 1991. 11.
- 國民銀行, 『中小企業 金融利用實態 調查報告書』, 各 年度.
- 金俊經, 「資金흐름의 改善과 商業어음 割引制度 活性化 方案」, 『KDI 分期別 經濟展望』, 韓國開發研究院, 1991년 겨울호.
- 金俊經·文字植·金世炫, 「通貨의 供給經路가 인플레이에 미치는 影響: 現行 韓國銀行 貸出政策에 미치는 示唆點」,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93년 겨울호.
- 南大植, 「우리나라 流通金融의 現況과 改善方案」, 『信用管理』, 信用管理基金, 1993년 겨울호.
- 東洋經濟研究所, 『Factoring 實務解說』, 1992. 1.
- , 『中小企業 流通金融 專門機關 및 物流센터 設立에 관한 妥當性 檢討』, 1992. 6.
- , 『表紙픽토링義務 活性化 方案』, 1993. 1.
- 吳世萬·朴成峻·申雲, 「再割引制度의 改善方向」, 『調查統計月報』, 韓國銀行, 1994. 7.
- 劉炳夏·李柱卿, 「支準制度의 改善方向」, 『調查統計月報』, 韓國銀行, 1994. 9.
- 李基榮, 『政策金融制度의 現況, 效果分析 및 改善方向』, 政策研究資料 94-01, 韓國租稅研究院, 1994. 3.
- 전한백, 「銀行 表紙어음制度의 主要內容과 運用現況」, 『投資金融』, 全國投資金融協會, 1994년 가을호.
- 鄭健溶, 「信用貸出 擴大를 위한 方案: 中小企業을 中心으로」, 韓國租稅

研究院, 1994. 9.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의 金融利用 隘路實態 分析』, 各年度.

——, 『中小企業經營實態 吳 動向』, 各號.

韓國租稅研究院, 『國稅行政 改革方案』, 1994. 12.